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정책 토론회

이명박 정부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일시 | 2012년 2월 15일(수) 오전10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프로그램

- 10:00 사회 장유식 변호사
- 10:10 발표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윤태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 10:30 지정토론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 전 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 11:10 휴식
- 11:15 종합 토론
- 11:40 폐회

목차

발제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 윤태범	1
토론1	한시적 과거사관련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김동춘	31
토론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과 운영관행 개선을 위하여 / 김형완	35
토론3	이명박 정부 하 노동계 참여 정부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 김태현	38
토론4	합의제 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의 문제점 :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 라영재	43

■ 표 <참여연대 작성 499개 위원회 현황>

발 제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윤태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머리말 : 의의와 취지, 조사방법

1. 국정운영의 중요한 한 축, 정부위원회

- 우리 정부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가 있다. 중앙부처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진 위원회에서부터 단순한 자문활동에 그치는 위원회까지 다양각색의 위원회들이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6월 기준으로 중앙 부처 산하에만 499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한다.
- 이렇듯 위원회 조직의 비중과 중요성이 늘어난 것은 기존의 관료제 조직이 일정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폐쇄성, 비밀주의, 일방성, 계층성, 권위주의, 독단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계층제적인 정부 관료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위원회는 활용되고 있다.
- 반론 또한 존재한다. 위원회가 오히려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국정관리를 저해하기도 하며, 많은 위원회 설치로 예산 낭비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계층제로 운영되는 전통 관료제 뿐 아니라 다양한 위원회들을 활용하여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를 활용한 국정운영은 이제 일반적이다. 국정 운영을 위한 조직 상의 두 축으로서 계층제적인 관료제 조직과 수평적인 위원회 조직이 존재하며, 이 조합을 기초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 위원회를 만들고, 또 설치된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위원회 등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를 축소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참여정부시기 언론과 야당의 이른바 ‘위원회 공화국’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서, 각종 정부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으로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축소하는 기조를 갖고 있었다.

2. 보고서의 구성

-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조직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문제점 분석과 더불어 개괄적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특히 위원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는 물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분석을 위하여 번거로운 수작업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가 첨부한 <참여연대 작성 2011년 499개 정부위원회 세부 현황>이다. 2011년 9월 행정안전부가 국회 국정감사시 보고한 자료 <2011년 정부위원회 현황>을 기본으로 제정연도/변화양상/근거법령/주요기능/보고서 공개여부/위원장 직위/위원 구성/연도별 예산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엑셀파일의 형태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할 예정이다.
-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수고를 한 행정감시센터의 전 구성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3. 조사 방법

- 폐지/신설 위원회 : 행정안전부에 리스트 정보공개청구 후, 이를 단서로 세부사항 조사
- 법률로 정한 위원회(이하 법정위원회) 현황 : 행정안전부 집계 리스트와 중앙정부 42개 부처의 부처별 홈페이지에 위원회법 15조에 따라 공개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보고서 취합 비교조사
- 훈령/예규상 위원회(이하 법정외 위원회) 현황/참여위원 현황 : 법정 위원회 보고 양식을 원용, 42개 중앙정부부처 정보공개청구 후 분석조사
- 기타 : 자체 홈페이지 보유 위원회 현황 게시물 분석

정부위원회 조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위원회의 법적 정의 형태와 평가 개념의 도출

- 국정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은 정부조직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마련되어 있다.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조직은 기본적으로 계층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 그러나 제한된 경우에 계층제적 조직이 아닌 합의제 조직, 즉 위원회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정부조직법 제5조에서는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별도의 설치 근거 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들은 별도의 근거 법을 갖고 있다.
- 이 규정에 근거하면 행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독립성과 합의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대통령 >국무총리 > 장관으로 이어지는 계층제에서 '독립'하여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의사결정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나아가 내부의 의사결정은 기존의 부·처·청 조직과 같이 계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상의 취지에 충실하면 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가 얼마나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의 의사결정은 합의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조직법에서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구는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의 장은 장관급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아니다.
- 한편, 정부조직을 다루고 있는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같은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위원회를 통하여 <정부 내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의 행정참여 기제로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면, 정부위원회의 핵심 목표는 개방성,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국민 참여 등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가 위원회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2.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구분과 세부 분류

- 정부조직 내에 위원회는 크게 2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독립적 행정조직으로서의 행정위원회와 더불어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위원회인 자문위원회가 그것이다. 흔히 정부위원회로 알려진 것들 중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한다. 즉 기존의 행정조직에 속해 있는 각종 자문, 심의 위원회 등으로서, 중앙 부처 소속의 500개 가까운 법정위원회들이 이에 해당한다.
- 행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속을 갖지 않는 기관, 중앙부처 수준의 행정기관, 소속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소속 기관에 따른 행정위원회 분류

구분	해당 위원회
무소속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규제개혁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무역위원회, 복권위원회, 전기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각종 과거사위원회 등

-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를 표시할 권한이 있으며 사무국 등 필요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능과 함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사실상의 행정부처이다.

표 2) 자문위의 행정기관 법적 기속에 따른 분류

위원회 결정에 따른 행정기관 기속 여부	특성	해당 위원회 예시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	‘의결’, ‘재결’, ‘결정’ ‘심판’, ‘심사’, ‘분쟁조정’,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음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등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위원회	법령상 ‘심의·자문’, ‘심의·조정’, ‘평가’, ‘조정’ 등으로 명시된 경우가 많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 반면 자문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대부분 비상설의 위원회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으며, 결정사항을 대외적 표시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업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가능하다.

3. 정부위원회 관리를 위한 법체계

- 정부위원회 전체 규정에 대해 다루는 법률은 2가지이다.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앞서 말한대로 <정부조직법>에는 독립성, 전문성, 합의제 등을 목적으로 행정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정/지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제시한다.
- 그리고 개별적인 위원회의 설치 및 관련 기능과 관련한 별도의 법률이 기관별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는 등, 개별 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제각각 규정되어 있다.
-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2008년 12월 새로 제정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로 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나 혹은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업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 업무가 계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 두 번째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구성·운영기준을 정하였다. 위원회에는 행정위원회 등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을 둘 수 없도록 하였다.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안건의 사전 통보, 이해관계자의 참석, 회의운영의 공개 등 운영원칙을 제시하였다.
- 세 번째로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원회를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였다.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설치 후 위원회 현황 및 활동 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이상과 같이, 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주로 위원회의 설치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위원회 설치법에서는 동법의 제정목적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규정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4.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관리정책

- 이명박 정부는 ‘정부위원회 관리운영 선진화’라는 목표 아래 ○정부위원회 관리제도 정착 ○정책 추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작은 정부’를 위한 위원회 운영 효율화라는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사전협의 절차 등을 통한 위원회 설치 엄격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불요불급한 위원회 지속 정비를 중점계획으로 설정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다.¹ 이와 같은 정부위원회 개선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된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관리정책이 당초의 목적대로 적절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하다.
- 이명박 정부는 정부위원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문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을 귀결되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위원회 정비 사업으로 348개 위원회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는데,² 폐지된 위원회는 20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지 207개, 소속·직급조정 30개, 현행유지 25개, 기한설정 10개, 운영활성화 22개, 국회계류 54개). 이는 취임 초기부터 공식적으로 위원회 수를 줄이겠다고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다양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지적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정부위원회에 대한 경시 분위기가 배경의 일부분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의견상 실적만을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 정비는 일견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권 초기 ‘국가인권위’ 위원들의 집단 사퇴를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월권, ‘사학분쟁조정위’의 녹취록 비공개 논란, ‘청소년보호위’의 잣대 없는 19금 심의,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퇴장과 파행적 결정, 심지어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의 민간위원 퇴장 후 5공 인사 국립묘지 안장 결정 문제 등 이명박 정부 내내 각종 위원회들의 독주와 파행적 운영 등이 끊이지 않아서 오히려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 앞서 말했던 대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정부위원회의 핵심적인 쟁점은 단순히 위원회 수의 과다 여부가 아니라 정부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여 당초의 취지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여부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는 제대로 보지

1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작성 지침 <2010년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http://goo.gl/95lsn>

2 2011.9.14 (설명) 행정안전부 <입기말 앞둔 이명박 정부도 역시나 위원회 공화국> 동아일보기사 해명자료 <http://goo.gl/fs3gN>

않고, 단순히 위원회수의 축소에만 함몰되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책추진 및 실태 분석

1. 자문위원회

(1) 추진 경과

- 이명박 대통령은 2008. 1. 14일 당선자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균살을 빼고 방만한 조직에 나사를 조여야 한다”며 대대적인 정부조직 구조조정을 예고하였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당선된 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2008. 1. 16일에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통해 215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폐지하는 계획을 밝혔다.

표 3) 이명박 정부 위원회 정비 경과

시 기	내 용	결 과
2008. 4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위원회 현황과악
2008. 8	법률 시행령 상의 위원회 삭제	시행령 조항에서 45개 삭제
2008.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2008. 12. 31 제정
2009. 5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시행	위원회 현황과악
2009. 8	205개 위원회 정비 완료	폐지 164개 소속 등 조정 27개 유지 14개
2010. 6	2010년 위원회 현황조사 - 총 431개 위원회	이명박 정부 기간 중 227개 폐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79개 신설 현재 431개 위원회
2011.9	2011년 위원회 현황 발표 - 총 499개 위원회	폐지 11개 신설 30개 기존 누락 64개

- 취임 첫 해인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기존 위원회들의 문제를 파헤치는데 주력하였다. 4. 29일 감사원은 정부 산하 위원회 459개 중 185개 위원회가 기능 중복, 유사, 설치목적 달성, 운영 부실 등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³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실태조사 착수 및 현황 파악에 착수, 5. 27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운영 중인 530개 자문위원회의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였으며,⁴ 이후 10.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갖는 45개 위원회 일괄

3 '08. 4.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http://goo.gl/JPgea>

4 '08.5.27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절반 이상 줄인다> <http://goo.gl/WNISS>

폐지하기로 하였다⁵.

- 이후 이명박 정부는 '정부위원회 관리운영 선진화'라는 목표 아래 ▲정부위원회 관리제도 정착 ▲정책 추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운영 활성화 ▲「작은정부」를 위한 위원회 운영 효율화라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사전협의 절차 등을 통한 위원회 설치 엄격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불요불급한 위원회 지속 정비 등을 중점계획으로 설정하고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였다.
- 2011년 9월 행정안전부는 국회 국정감사 보고자료 <2011년 정부위원회 현황>에서 2011. 6월 현재 위원회 숫자는 499개라고 하였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총 238개의 위원회가 폐지되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 위원회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2) 실태

① 자문위 폐지 등 축소의 의미

- 먼저 자문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줄이는 작업을 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행정위와는 달리 행정기관장의 판단을 돕는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기에 기관장의 판단 아래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운영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운영실적이 없다고 폐지하는 것은 정부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 정부의 적정 위원회 수란 없다. 각 위원회가 얼마나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많다고 해서 또는 적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표 4) 연도별 정부위원회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364	368	358	381	403	416	573	441	431	499
소속별	대통령	18	17	23	25	28	32	21	27	20	18
	국무총리	34	35	44	47	50	52	67	56	53	56
	각 부처	312	316	291	309	325	332	485	358	358	425
성격별	행정위원회	35	35	42	42	44	44	39	42	40	34
	자문위원회	329	333	316	339	359	372	534	399	391	465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현황조사자료」 <http://goo.gl/1IGeQ> *2011년은 2011 정부위원회 현황을 자체기입

5 '08.10.1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통령령 근거 54개 위원회 일괄 정비> <http://bit.ly/pw7Ges>

6 자문위라 할지라도 입맛에 따른 설치 운영은 대단히 큰 문제다. 2012. 2. 6일 한 시민이 참여연대에 제보한 내용에 의하면 의료심사조정을 제기하려 했는데 의료법 70조에 의해 이를 담당하는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유명 위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 물론 정부가 발표한 위원회 축소자료에는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들도 있다. 즉 통폐합된 위원회 관리가 불명확하여 통계처리가 잘못된 부분들도 있다. 예를 들어 공적자금관리위의 경우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위로 소속을 옮긴 것 뿐인데, 2010 현황에는 폐지/신설 양쪽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방접종심의위,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 등은 감염병관리위로 통합되었는데 2011년 폐지/신설에 모두 기록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위원회 실제 수와는 관계없이 폐지와 신설이 부풀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참여연대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들의 최초 제정연도를 중심으로 그 변천과정을 재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 114개의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별첨 499개 위원회 현황표 참조)

② 여전히 방만한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 위원회

- 2008년 4월 감사원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제도화 및 추진상황 점검 등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 이에 이명박 정부 출범시 대통령령에 법적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국정위원회 5개(동북아시아위/교육혁신위/지속가능발전위/양극화민생대책위/정책기획위)를 모두 폐지하였으나,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령에 의한 위원회는 5개로 지속적으로 신설되었음은 물론, 주요 기능 역시 국민원로회의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과거 국정과제 위원회와 대동소이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표 5)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

이명박 정부 현재	근거	주요 기능	국정과제 여부
국가경쟁력강화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및 지원	○
국가브랜드위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가브랜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주요 국가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	○
사회통합위	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의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
미래기획위	미래기획위원회 규정	미래사회 전망,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의 분석, 미래생활과 관련된 총체적 국가비전 및 전략 수립, 대통령이 요구하는 미래사회 주요 정책의 연구·평가	○
국민원로회의	국민원로회의규정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주요 국가정책의 수립과 범국가적 경축 행사의 개최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

-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정과제 위원회는 참여정부보다 1개 적지만, 예산 면에서는 오히려 과거의 국정과제 위원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과제위원회의 숫자가 줄었다는 것만을 강조하였지,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표 6) 2007년/2011년 국정과제 위원회 예산 현황 비교 (단위 천원)

참여정부 시기	2007년 예산	이명박 정부 현재	2011 예산
정책기획위	1,883,806	국가경쟁력강화위	3,246,000
지속가능발전위	1,405,848	국가브랜드위	8,762,000
교육혁신위	1,277,898	사회통합위	2,814,000
동북아시대위	1,311,000	미래기획위	2,520,000
양극화민생대책위	3,317,468	총 17,342,000	
총 9,541,073			

③ 공무원 등 당연직 중심의 의결위원회 구성

- 중앙행정기관장의 행정결정에 있어 반드시 해당 자문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결’위원회 (현재 총 90개)의 경우, 따로 사무국이 없을 뿐 행정위 만큼 중요한 위원회이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의 경우에도 민간인이 위원으로서 다수가 임명됨으로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 위원회 중 21개가 위촉직의 수가 당연직(공무원)보다 적거나 같다는 점에서, 정부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표 7) 의결위원회 중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은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회 명	성격	위원장	직책	위원수	당연	위촉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자격검정위	심의의결	공무원	학교지원국장	9	7	2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	심의의결	공무원	국가보훈처차장	15	8	7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공무원	국가보훈처차장	17	9	8
국무총리	수도권정비위	심의의결	공무원	국무총리	18	12	6
국무총리	여수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	심의의결	공무원	국무총리	20	20	0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심의의결	공무원	국무총리	23	18	8
국무총리	중앙정계위	심의의결	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	9	7	2

국무총리	행정협외조정위	심의의결	민간인		8	4	4
국방부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	의결	공무원	국방부차관	9	5	4
국방부	군인연금급여재심위	의결	공무원	인사복지실장	9	6	3
국토해양부	폴제수급심의회	심의의결	공무원	국토부1차관	13	7	6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심의회	심의의결	공무원	국토부장관	13	8	5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	의결	공무원	금융위부위원장	6	4	2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위	심의의결	공무원	기상청장	20	14	6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	의결	공무원	기재부장관	12	10	2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의결	공무원	기재부1차관	12	6	6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	의결	공무원	기재부세제실장	8	5	3
기획재정부	재정위험관리위	심의의결	공무원	기재부장관	19	12	7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공무원	통일부장관	18	13	5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	민간인		11	5	5
환경부	국립공원위	심의의결	공무원	환경부차관	20	11	9

④ 위원장 중복 선임과 충실한 임무 수행의 어려움

- 예를 들어 국무총리의 경우, 총 33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이 정도면 실지로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해당 위원회의 위상 때문에 총리가 위원장을 하지만, 결국 위원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자문위의 경우, 위원장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맡기는 등 위원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⑤ 위원들의 중복 위촉

-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0년 위원회 현황 중 위원 명단을 수집해 교차 분석한 결과, 21인이 10~4개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위원회들의 홈페이지 위원 공개율이 431/181개(41.9%)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유사성이 높거나 직역 대표성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은 과다 위촉은 결국 위원회에 대한 충실한 참석과 활동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표 8) 중복위촉이 6곳 이상인 위원

(각 부처 게시 2010년 현황 자료를 분석)

성명	중복	참여위
김○○	10	FTA국내대책위/가축방역협의회/농가소득안정심의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축산발전심의위/전기위/에너지위/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
박○○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최저임금위/고용보험위/근로시간면제심의위/고용보험심사위
이○○	7	재정정책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위/국가핵융합위/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인정기관심의위/바이오안전성위/산업기술보호위
손○○	6	FTA국내대책위/자격정책심의회/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무역조정지원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국가경쟁력강화위
이○○	6	국가브랜드위/자격정책심의회/국가인적자원위/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사회통합위/통일고문회의
장○○	6	농가소득안정심의위/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축산발전심의위
김○○	6	농가소득안정심의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축산발전심의위/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보편적시청권보장위
김○○	6	가축방역협의회/농가소득안정심의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축산발전심의위
강○○	6	FTA국내대책위/농가소득안정심의위/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

2. 행정위원회

(1) 추진 경과

-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행정위원회들은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 이명박 정부는 출범후 중앙행정기관 수준의 행정위원회에 대한 개편작업을 하였다. 무소속 이던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 업무 일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것을 필두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만들고, (구)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기능을 공정거래위로 이양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와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렴위를 통합해 국민권익위를 신설하였다. 2011년 3월에는 이전 과학기술위의 자문위 기능과 교과부의 주요 R&D 예산편성권을 합해 대통령 직속 행정위로 과학기술위를 만들었다.

표 9) 이명박 정부 이전/이후 중앙행정기관형 행정위원회 변화 양상

이명박 정부이전 중앙부처형 행정위원회	변화양상	현재 중앙부처형 행정위
공정거래위	+(구)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기능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	금융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국가청렴위(+국무총리 행정심판위)	국민권익위
	(구)방송위원회 방송정책 및 규제 기능+(구)정보통신부 통신서비스정책, 규제 기능	방송통신위
	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R&D 예산편성	국가과학기술위
중앙인사위	행정안전부 통합	
비상기획위	행정안전부 통합	
국가청소년위	여성가족부 통합 자문위 신설	
중소기업특위	중소기업청 통합	

(2) 실태

① 위원 구성의 문제

- 행정위원회의 핵심은 어떤 사람(공무원 혹은 민간인)을 위원으로 선임하며, 상임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하는가 등이다.
- 방송통신위의 경우, (구)방송위와 비교하여 비상임 4인의 위원을 없앴으며, 위원장 호선 방식에서 대통령 임명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금융위와 (구)금융감독위의 경우, 비상임을 2인을 없앴으며,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제청토록 해 사실상 위원장에 의한 임명방식으로 하였다.

표 10) 금융위/방통위의 이전 방송위/금감위와의 구성 변화 양상

	(구)금융감독위	▶	금융위
위원 수	9인		9인
구성	상임 3인, 비상임 3인, 당연직 3인		상임 4인, 비상임 1인, 당연직 4인
위원장임명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임명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장관 추천 대통령 임명		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기타위원	추천기관 추천 대통령 임명		추천기관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

	(구)방송위	▶	방송통신위
위원 수	9인		5인
구성	상임 5인 비상임 4인		상임 5인, 비상임 없음
위원선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회 호선		위원장 대통령 임명, 부위원장 위원회 호선
위원 임명	3인은 교섭단체 3곳 국회의장 추천, 3인은 국회문광위 추천 국회의장 추천		위원장을 포함 2인은 대통령 임명, 3인은 교섭단체 국회 추천

-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2009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인권위 의견제출 여부에 위원 7명이 찬성하였으나 당시 현병철 위원장이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였다.
- 중앙행정부처형 행정위원회의 총 위원 55명 중 상임위원이 28명(50.5%)이며 비상임위원이 27명이다. 비상임위원을 두지 않는 곳은 방송통신위 1곳이며, 금융위는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1명(이전 3명)이다.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원보다 많은 위원회는 국민권익위(8:7)와 과학기술위(7:3)이다.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간에 적절한 비중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러나 비상임위원도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만, 상임위원만큼의 충분한 정보와 몰입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상임위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원회가 당초의 취지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 이렇듯 위원회는 상임위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임위원을 어떤 사람

들이 담당하는가가 중요하다. 상임위원 28명의 출신별 분류를 보면, 공무원 출신이 15명으로 53.5%를 점하며, 언론계(3), 법조(3), 단체(3), 학계(3)의 순이다. 행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비상임위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권한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는 상임위원의 경우 공무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위원회를 설치한 당초의 목적이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② 과거사 위원회 등의 통합 추진

- 2008. 4월 감사원은 동일 유사한 업무의 중복수행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기와 지역, 주제를 중심으로 나누는 기존 과거사 위원회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 통합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감사원의 이러한 주장은 각 위원회에 대한 입법의 취지와 사건의 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원회 경시적 입장에서 접근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 역시 참여정부 시절의 과거사 위원회들을 무력화하는 데에 이러한 감사원의 논리를 이용했다. 실지로 어떤 위원회도 진실화해위와 통합되지 않았다.(아래 표 참조)
- 이명박 정부도 새로운 과거사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발족 후 통합폐지) 등 4개 위원회가 신설되었다.

표 11) 취임 초기와 2011. 6월 현재 과거사위원회 변천

2008. 3 당시	2011. 6 현재	존속기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기한 종료	2010. 6 기한종료 : 2년 연장가능했으나 연장하지 않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	존치	
거창사건등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	존치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	존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존치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	존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기한 종료	6개월 연장 2009.12.30 활동종료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기한 종료	2010. 7 기한종료 : 2년연장가능했으나 연장하지 않음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	통합 신설	2008. 6 신규 발족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 와 통합되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발족 (신규제정 2010. 03. 22)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	존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	존치	
군의문사진상규명위	기한 종료	2008. 12. 31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신규제정 2008. 03. 28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	신규제정 2010. 03. 26
총 13개	총 10개	

향후 추진해야 할 위원회 개선의 포인트

1.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위원회법 15조에 의하면 소관 부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각 부처 홈페이지를 방문, 정부 위원회 현황 게시 여부를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소관 정부위원회가 있는 총 36곳의 정부부처 중, 약식으로라도 위원회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8곳(22%)이었다. 참여 위원에 대해서는 절반인 18곳(총 대비 50%)의 정부부처가 위원 현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사실상 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표 12) 홈페이지 법정위원회 위원회 현황/위원 공개 부처 (○ 공개 △일부공개 × 비공개)

구분	소관 부	위원회 현황공개	위원 공개	구분	소관 부	위원회 현황공개	위원 공개
1	고용노동부	○	○	19	문화재청	○	○
2	공정거래위원회	×	×	20	문화체육관광부	○	○
3	관세청	○	×	21	방송통신위원회	○	○
4	교육과학기술부	○	△	22	방위산업청	홈페이지	×
5	국가과학기술위	해당없음		23	법무부	○	×
6	국가보훈처	○	△	24	법제처	×	×
7	국가인권위	○	○	25	보건복지부	×	×
8	국무총리실	○	○	26	산림청	○	×
9	국민권익위	○	○	27	소방방재청	△	×
10	국방부	○	△	28	식품의약품안전청	△	×
11	국토해양부	○	△	29	여성가족부	○	×
12	금융위원회	×	×	30	외교통상부	×	×
13	기상청	×	×	31	중소기업청	△	×
14	기획경제부	○	○	32	지식경제부	○	○
15	농림수산식품부	○	△	33	통일부	○	×
16	농촌진흥청	○	○	34	특허청	○	×
17	대통령실	위원회별홈페이지		35	행정안전부	○	○
18	국가인권위	×	×	36	환경부	×	×

- 한편, 위원회법에 규정을 받지 않고 각 행정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령 상의 위원회를 목적으로 정부부처 41곳에 대하여 부처 별로 훈령상 위원회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이 훈령상 위원회 현황의 경우 자료가 없어 공개하지 못하거나 부분 공개한다는 답변이 4 곳(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이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모두 있지 않음에도 홈페이지를 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하였다.
- 위원 현황의 경우, 일부 소관 위원회를 비공개하는 부분공개가 18건, 이에 소관 위원회 위원명단 전부를 비공개한 경우가 3건이었다. 전체 대상 중 절반이 넘는 부처가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였다.
- 비공개 사유로 주로 제시하는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5호와 6호⁷ 인데, 5호의 경우, 명단의 공개 자체가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6호의 경우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예외로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부처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 위원회를 설치하는 중요한 목적중의 한 가지는 투명한 의사결정, 투명한 기관운영인데, 앞서의 실태조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관의 폐쇄적인 계층제적 조직과 별반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 7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표13) 훈령상 위원회 현황/위원 공개에 대한 각 부처별 답변

(○ 공개)

번호	대상	법정의 위원회 현황	위원현 황	부분/비공개 이유
1	감사원	○	부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2	경찰청	○	○	
3	고용노동부	자료 없음	부분	1.법정위원회외위원회운영현황:우리부에서취득관리,이용보존하여온것이아니어서공개(또는비공개)대상이될수있는자료로 존재하지않음 2.위원회역대위원현황:설치근거가법령에의한위원회로서2007년~2011년현재까지우리부에서관리보존하고있는위원회현황자료
4	공정거래위원회	○	○	
5	관세청	○	부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의하여이사결정과정에서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몇몇위촉직위원명단의상세사항은비공개하며,개괄적사항만공개하오니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6	교육과학기술부	부분	부분	1.내용:법정위원회외위원회의활동내역서, 위원회 역대위원 현황 2.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기 문서(또는 정보)는 교과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바(“정보 부존재”) 동 법 제3조의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7	국가과학기술위	○	○	
8	국가보훈처	○	부분	○비공개사유:「국가보훈처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에의거“회의참석자의심리적부담으로인하여술직하고자유로운사교환이이루어질수없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하는보훈심사위원회,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현충시설심의위원회,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자문협의회의,독립유공자서훈공직심사위원회”의위촉직위원명단은비공개합니다.
9	국무총리실	○	○	
10	국민권익위	○	○	
11	국방부	○	부분	일부 위원회 위원명단 비공개
12	국세청	○	부분	일부위원회의위촉직위원에관한정보등은위원회에상정된안건등의심의를위한공정한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할우려등이있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와제6호,동법제14조와국세기본법제64조제2항에의하여일부내용을비공개하오니이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참고		국토해양부소관위원회는국토해양부인터넷홈페이지(www.mltm.go.kr)“국민마당-국토해양부위원회”코너를통하여공개되고있으니,동코너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정보공개법제18조제1항에의해공개결정되어진내용에대해서는이의신청이불가합니다.
14	금융위원회	○	부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감리위원회외위원명단은공개시결정사안이해관계자들의부적절한개입등으로공정한업무수행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에따라비공개함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	기상청	○	○	
16	기획재정부	○	○	
17	농림수산식품부	○	부분	일부위원회의위원명단및심의·의결사항등의공개는공정한심의에지장을줄수있어 비공개함
18	농촌진흥청	○	○	

19	문화재청	○	○	
20	문화체육관광부	○	○	
21	방송통신위원회	○	부분	1.내용:정부위원회이외위원회의위원명단및현직개인정보 2.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 3.사유: 상기정보는이름,전직,현직등개인식상에관한정보가포함되어있어서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공개할수없음을알려드리오니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	방위산업청	○	○	
23	법무부	○	부분	□비공개정보명:위원명단 □비공개근거및사유:비공개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비공개사유:공개청구한위원명단(세부내용불입)은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어비공개하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24	법제처	○	○	
25	병무청	○	부분	
26	보건복지부	○	○	
27	산림청	○	○	
28	소방방재청	○	○	
29	식품의약품안전청	○	○	
30	여성가족부	○	비공개	위원회에서는심의의결기능을주로하므로위원에대하여현황은공개하더라도명단은공정한업무수행시장등으로비공개함(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5호)
31	외교통상부	부분	비공개	1.위원회운영현황요청하신사항중△세부심의.의결내용및△예산편성.집행현황은외교부의정책수립및집행을위한내부검토포정에속하는기술적사항으로공개되기부적합하거나공개될경우향후공정한업무의수행을어렵게한다고판단되어공개하지못하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2.역대및현재위원명단○민간위원의경우,개인정보보호를위해성명또는직위를공개하기어렵다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32	조달청	○	부분	민간위원에대한소속직위명단등은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6호(당해정보에포함되어있는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에해당되지만,청구취지가손상되지않고특별개인이식별되지않는범위내에서동정보의일부를부분공개
33	중소기업청	○	○	
34	지식경제부	○	○	
35	통계청	○	○	
36	통일부	○	○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본 기관에서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법정 위원회(5개)의 2007년부터 현재까지 위원 변동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제공된 자료 취급에 유의해 주셔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훈령이나 예규 등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이 있는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음.
37	특허청	○	○	
38	해양경찰청	○	비공개	위원회의2007년부터현재까지위원(장)변동내역공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6호에의거이름,주민등록번호등개인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개인의사생활의비밀또는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정보.

39	행정안전부	부분	부분	1.내용:2009년이후위원명단,2003~2008년까지연도별활동내역서와위원명단 2.근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3조 3.사유:청구내용에대한기록물을보유하고있지않음
40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41	환경부	○	부분	2.위원명단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에근거개인의성명등신상이노출되는정보로서비공개 대상임 -법령으로설치된위원회(정부위원회)는예외적으로특별한사유가있을시공개가능 하도록되어있으나,이경우에도심의기능을가진위원회는심의에영향을미치므로비 공개하도록되어있음 -환경부에법령에의하여설치된위원회는모두심의위원회로서위원명단비공개대상 임

2. 위원회법의 재정립

- 2008년 12월 31일 정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이 위원회법은 그 동안 국가행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만 규정되어왔던 위원회 조직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한 노력의 하나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할 수 있다.

표 14) 2008. 12. 31일 제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⁸⁾의 요지

적용 내용조문	내용의 개요
1조 목적) 2조 기본원칙) 3조 적용범위)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위원회 정의 :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위원회는 법의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안됨. ▪ 적용 범위 : 대통령 소속,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 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원회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타법과의 관계 : 위원회 관련 타 법률 제,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위원회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5조 설치요건) 6조 설치절차) 7조 중복 위원회 설치제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요건 : 행정위원회 설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문위원회 경우에는 1, 2의 요건을 갖춘 것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p>필요가 있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시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 기피 회피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설치 제한 :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설치 위원회와 성격/기능 중복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 의견 종합 반영 위해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
<p>8조 위원회의 구성) 9조 위원회의 운영) 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2조 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임 원칙 :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행정위원회는 최소한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음) ▪ 임기 : 민간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 분과 :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음. ▪ 안전통보 :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정과 안전 등을 위원에게 통보 다만, 긴급한 사유거나 보안관련 사항 제외) ▪ 회의방식 : 가급적 출석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 ▪ 안전 관련 이해관계인의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 참석 가능 ▪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운영. ▪ 사무기구 설치 : 행정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설치가능. 자문위원회 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나 상근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제외 ▪ 존속기한 : 한시적 운영 필요 행정위원회를 설치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 자문위원회 등은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 존속기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 금지)2년마다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폐지 등이 필요하면 정비계획에 포함. ▪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p>13조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14조 활동상황 점검) 15조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각 부처는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 ▪ 매년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당초 이 법은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정부 위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당초 취지에 걸맞게 구성,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법은 위원회 설치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위원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연방자문위원회법(FACA : Federal Advisory Cimmittee Act of 1972)⁹ 이다. 미 연방자문위원회법과 핵심내용을 우리의 위원회법과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5) 미 연방자문위원회법과의 비교

적용 문	내용조	위원회법	FACA
(가) 적용 예외	범위와 예외	<p>제2조 (기본원칙) 제3조 (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예외 -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 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p>정의(FACA §3)적용(FACA §4)</p> <p>"committee, board, commission, council, conference, panel, task force" 등의 용어를 불문하고 법령이나 정부기구의 계획이나 대통령에 의해 활용되거나 만들어지는 자문기구</p> <p>*예외 -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 위원회, 국립과학원과 국립행정원 산하 자문위원회, 중앙정보국(CIA)와 연방준비제도, 지방정부기구의 자문위원회</p>
(나) 정부기구별 권한과 의무		<p>제13조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제14조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p> <p>행정기관의 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1. 위원회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회 운영인력, 예산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운영 실적 등의 활동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 •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p>행정안전부 장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 •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의 활동내역서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 •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p>의회 위원회의 책임: 조사와 지침(FACA §5)</p> <p>상원과 하원의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입법적 조사기능의 행사에 있어서, 각 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 조사심을 하여야 한다. 즉 자문위원회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통합되어야 하는지, 자문위원회의 책임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등등(§5(a))을 심의하여야 한다.</p> <p>대통령의 책임 : 의회에 연례보고서 작성, 제출 등(FACA §6)</p> <p>대통령은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공적 권고에 대해서 관련 조치를 취하고 평가해야 할 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한다.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나 혹은 그 위임자는 의회에 대해서 리포트에 담겨져있는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연방조달청(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장의 책임</p> <p>GSA내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위원회관리사무국(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을 설치, 유지</p> <p>GSA는 자문위원회가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부여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다른 위원회와 통합되어야 하는지, 퇴출되어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자문위원회의</p>

	<p>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p>	<p>활동과 책임성에 대하여 포괄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적 지침과 관리적 수단을 제시하여야 하며, 내부 연구와 OPM의 지문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원, 스태프, 컨설턴트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p> <p>기관장의 책임(FACA §8) 각 기관장은 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자문위원회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법 §7과 §10하에서의 GSA의 지시에 따른 통일된 행정적 지침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p>
(다) 존속기한	<p>제11조 (위원회의 존속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 •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p>자문위원회의 종료 : 갱신, 지속(FACA §14) 각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경우가 아닌 한 법에 의하여 효력을 가진 후 2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즉 2년 기간의 종료 전에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대통령이나 공무원에 의하여 갱신되거나 혹은 의회법(Act of Congress)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으로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만 2년을 초과하여 유지될 수 있다.</p>
(라) 운영과 공개	<p>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제12조 (수당) 제15조 (위원회 운영 공개 및 국회보고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기급한 사유 제외) • 위원회는 출석회의 개최(안건 경미한 경우 제외)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함 •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음(예외 인정) •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p>자문위원회 절차 : 회의, 통지(FACA §10) 각 자문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하며((a)(1)),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허용되어야 한다((a)(3)).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의한 혹은 자문위원회를 위한 각종 기록들은 공적인 조사를 위하여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p> <p>재정적, 행정적 규정 : 기록 유지, 회계, 기관 지원기능(FACA §12) 각 기관은 자문위원회가 처리한 비용과 각 활동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GSA는 대통령 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재정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p> <p>의회 도서관의 책임(FACA §14) 행정관은 의회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의하여 생성된 각종 자료들을 최소한 8부 제공하여야 한다.</p>

9 <http://www.accessreports.com/statutes/FACA.htm>

-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부기구별 권한과 책임이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심의하며¹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나 혹은 그 위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¹¹는 식으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우리의 행정안전부 격인 연방조달청(GSA)은 법에 명기된 위원회관리사무국(Committee Management Secretariat)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각 중앙부처와 행정안전부의 소통으로 위원회 사업 점검이 사실상 그치며, 행정안전부의 한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 운영과 공개의 경우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를 1972년에 만들어져 조금씩 변화한 미 위원회법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특히 15조의 경우, 행정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보다 진일보한 조항이다. 그러나 실지로는 상세한 활동과 활동내역을 공개한 부서가 드문 현실임을 감안하면 아직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3. 훈령상 위원회 중 의결권을 가진 위원회의 재정립 필요

- 위원회법 6조 <설치 절차>에는 행정기관의 훈령상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은 따로 설치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하지 않게 되어 있다. 2008. 4월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에도 부령, 훈령 등의 하위 규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들도 행정력 및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¹²
-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결’기능이 포함되는 ‘훈령상 위원회’를 다수 발견하였다. 부처 자율로 위원회를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훈령상 위원회라 할지라도 행정결정을 일정하게 수행하는 ‘의결’위원회는 따로 틀을 만들어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표 16) 훈령상 위원회 중 의결 기능이 있는 위원회 (부서 공통 위원회 제외)

주관	위원회명	성격
중소기업청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심의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결
외교통상부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심의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평가위원회	의결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

10 의회 직속의 일반회계감사국(GAO General Accounting Office)이 이를 담당함.

11 FACA §6 대통령의 책임 : 의회에 연례보고서 작성, 제출 등

12 감사원,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 p88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산림청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의결
	아키텍처위원회	심의의결
병무청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의결
법제처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의결
국민권익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국토해양부	국민주택기금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기상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상기자재관리협의회	심의,의결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농림수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시험윤리위원회	심의,의결
	동해어업조정위원회	단순자문,심의,의결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심의,의결
농촌진흥청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	의결
	바이오그린21사업 농협생명공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문화체육관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의결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	단순자문,의결
	한국민속예술축제 추진위원회	심의,의결
	대한민국 체육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미술은행운영위원회	단순자문,의결
	국학유물선전위원회	단순자문,의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심의,의결
환경부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관리위원회	의결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인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정도관리심의회	심의, 의결
	경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행정협의회	심의, 의결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행정협의회	심의, 의결
	전북지역기업환경정책협의회	의결

4. 민관합의기구라는 틀의 위원회 문제

- 또한 행정위와 유사하게 활동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위원회 법에 귀속받지 않는 민관합의기구¹³가 상당수 존재한다. 수행하는 기능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위원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포괄하는 새로운 틀을 위원회법 안에 새로이 정할 필요가 있다.

표 17) 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주요한 민관합의기구

명칭	법적 근거	조직형태	위원 위촉방식	위원장선출방식
영화진흥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조	법인격	문화관광부장관	호선
방송통신심의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	독립사무시행	3인국회의장 3인 국회 상임위추천	호선
한국저작권위	저작권법 112	민법상 재단법인격 준용	장관위촉	호선
한국간행물윤리위	출판문화산업진흥법16조	법인격	관련법인단체추천	호선
언론중재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7조	독립수행(국회보고)	장관위촉	호선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법 88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	호선 변협추천자)

13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를 '분권자율기관(OECD용어)'이라고 설명. <http://www.kofic.or.kr/cms/386.do>

결론

- 대부분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계층제적 관료제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관료제 조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에 기인한다. 무엇보다도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함에 있어서 관료제 조직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많은 문제점들도 동시에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서, 폐쇄성, 독점성, 일방주의, 획일성, 비밀주의, 비민주성 등이 지적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 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위원회 조직은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오히려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의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의제적, 독립적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계층제적 관료제와 별단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정부가 내 놓은 위원회 개선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보다는, 단지 숫자상으로만 축소하는데 골몰해 있다.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 게다가 위원회 숫자 줄이기에 골몰한 나머지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위원회를 무리하게 통합하여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위원회 설계 및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 록

한시적 과거사관련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 진실화해위의 경우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1. 애매한 권한

대체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위원회라는 조직은 참으로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다. 분명히 법에 근거해서 활동하지만 조직의 위상은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다. 공식 정부기구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조직된 기구이기 때문에 일사분란한 행정 집행권도 갖고 있지 않으며, 결정은 재판과 같은 구속력도 없다. 정부조직이기는 하나 일부 행정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민간인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아무런 법적인 강제력이 없고, 오직 권고를 통해서 행정부가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정도의 힘만 갖고 있으며, 권고사항 또한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행정부의 집행력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의 실행 즉 재심, 사과, 보상, 위령사업, 교과서 정정 등 권고 내용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의지, 주로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정권의 정치적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2. 독립성의 이상과 현실

당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위원회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해서 부처간 조정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시행령의 개정도 청와대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력 충원 문제도 행자부(현 행안부)의 조정 혹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이상은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활동은 어느 것 하나 정부의 지원과 협조없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 있었다.

3. 상설 정부조직과의 긴장

조사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구의 협조가 알파요 오메가였다. 위원회는 법 상으로는 과거의 인권침해 관련 중요자료를 갖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관련기관, 특히 국방부, 경찰청, 검찰, 국가보훈처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고, 만약 그 기관이 거부하면 기관장이 그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었고, 또 과거 공안기관 종사자들이 출두를 거부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어있었지만, 실제 이 모든 법적인 협조 의무는 단지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하는 약간의 도덕적 강제력에 불과했고, 실제 이들 기관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다. 결국 정부 각 부서의 장관이나 청장의 의지만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그나마도 국방부처럼 지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면 차라리 쉬운 점이 있었지만, 경찰청처럼 상급자가 지시를 해도 하급 관련부서 책임자가 정권이 바뀔 경우 닥쳐올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차일피일 자료 제공을 미룰 경우 아무런 방법이 없었다.

이 문제는 청와대의 의지, 각 장관의 태도에 달린 문제였다. 진실위의 위원장이 장관급, 위원이 차관급이라고 하나, 한시적인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장관들과 동격으로 만나기가 어려웠고, 그나마 초대 송기인 위원장은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들도 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진실위가 반관반민조직의 특성을 갖고 때문에 군과 경찰은 자체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민간인인 당신들을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4. 시민운동과의 관계

진실위는 사회운동 조직이 아니라 명색이 정부조직이니 다른 정부기관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밖에서 이 조직을 건설적으로 비판하거나 또 위협에 처했을 때 강력하게 옹호하는 시민사회 세력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5. 위원의 구성과 운영

진실위의 모든 진실규명 결정은 15인의 위원이 전원회의에서 내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가는 애초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입법단계에서 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국민적 대표성을 살리기 위해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서 4인, 8인, 3인을 각각 추천을 하게 되었다. 이 역시 청와대의 지분이 높았고, 사법부 역시 청와대의 의중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 구성자체도 정권에 성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반대편인 한나라당 위원과 상임위원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사건건 반론과 견제가 계속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진실위가 여러 가지 파행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임기 2년이 끝난 다음 이러한 과거청산의 대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임명되고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통해 진실규명이 결정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기본적으로 합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은 일반 국민을 대표하여 상식선에 판단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합의기구인 위원회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수결을 강행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어느 정도 결론을 절충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진실위의 모든 결정은 이러한 타협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6. 사무국과 상임위원의 긴장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사무국과 조사를 관장하는 상임위원의 긴장은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위원장이 확실하게 통제하지 않을 경우, 사무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상임

위위는 그냥 지문위원과 같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무국이 조사지휘를 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조사는 상임위원의 지휘 하에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상임위원의 역할도 사실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한국에서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 상임위원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 의문사위원회 부터였다. 여느 상설 행정조직은 직급 별로 업무와 책임이 분화되어 있었지만, 외인 부대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했고, 조사관들 중에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차관급인 상임위원은 정무직이었지만 실제로는 조사국장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무직으로서의 역할, 조사와 조직운영 모두를 관장하는 상임위원 적임자를 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진실위 의결 과정에서는 기본법상의 '중대한 인권침해'의 범위를 둘러싸고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안과 다룰 수 없는 사건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나는 재산권 침해도 인권침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생명권 침해만으로 국한시키자는 결론이 났다. 또 다른 논란은 형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만 조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조사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조사개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실화해법 해석과 위원회의 설립 이상 간의 긴장이 언제나 존재했다.

7. 한시위원회의 조직운영의 어려움

파견 공무원과 민간 출신 조사관들 간의 불협화음을 피할 수 없다.

한시 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수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조직경험이 없는 민간 출신들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도 매우 크다.

조직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률의 보완과 운영관행 개선을 위하여

김형완 /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1.

백락청과 최장집의 표현을 빌면, 2012년의 한국사회는 중대한 체제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 1987년 6월항쟁 이후 모색된 87체제가 이제 2013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7년 체제의 핵심 가치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확립, 즉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한다면, 과연 2013체제의 핵심 화두는 무엇일까. 나는 그것을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 곧 민주주의의 내면화라고 말하고 싶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실현이 되겠다.

87체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그나마 불안정하게 도모되었고, 심각한 시행착오도 노정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역진이 87체제의 유제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2013 체제를 맞는 우리는 불가피하게 두 개의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시민권적 요구인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서의 법치주의 구현과, 사회권적 요구인 보편적 복지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내면화의 핵심가치는 '인권'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자면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가치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따라 이제 87체제의 극복과 2013체제의 확립이 좌우될 것이다.

지역과 시민공간에 인권의 가치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참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 및 국가는 다양한 거버넌스의 확장으로, 시장은 민주적 시장경제의 구축과 사회적 책임의 방향으로, 사회는 다양한 층위에서 협동조합 등 공동체성의 복원으로 각각 나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작은 정부론의 함정).

2.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가의 자기반성 기구이다.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가권력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인권침해 가해자임을 알 수 있다.

국가폭력은 전쟁과 같은 특수한 사건으로, 또 군대나 공권력을 통한 일상적인 수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를 통해 존중과 보호와 증진의 책임을 국가라는 의무주체가 짊어지게 하는 한편, 권리구제와 교육 홍보,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통해 인권보장의 항상적인 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명을 수행하려면 국가, 협의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만 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만장일치로 각국에 권고하고, 이후 국제인권기구협회의 승인심사위를 통해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 왔다.

물론 평가의 핵심은 독립성이다.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인권기구는 반관반민의 기구로서 국가 안에서 국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인권위가 정부나 의회와 달리 이라크파병반대의 의견을 냈을 때 노 대통령이 인권위는 원래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이라고 한 바 있듯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3.

인권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과 운영관행에 의한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먼저 제도적 방안 가운데는 헌법적 보장(헌법에 열거된 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질적으로 헌법이 추구하는 인권보장을 전담해서 수행하는 기구를 정부기관의 하나라고 인식하는 모순)과 현재와 같이 일반 법률적 보장이 있을 것이다. 헌법기구화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특별검사나 과거 방송위처럼 일반 법률에 근거하면서도 위상과 역할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은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제도를 약간 수정 보완하고, 어떤 운영관행을 확보해야 자기사명을 다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자 하는 한계 내에서 작성되었다.

4. 법률의 보완

- 41.기본법과 조직법으로 분화
- 42.인권위원 임명시 시민사회의 후보추천위원회, 국회의 인사검증절차 진행
- 43.대법원장 추천 삭제, 비상임 없애고 상임위원 총7인(여4 아3)으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
- 44.인권위원 공직진출 취임제한 규정 부활
- 45.사무총장 직급조정 대외관계 개선
- 46.기존 '업무의 독립' 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예산의 독립성 확보(위원회 규칙)
- 47.인권직군의 신설(검찰공무원, 교정공무원, 경찰공무원처럼 인권공직자 직군을 신설해서 신규채용부터 전입, 전출과 같은 일반행정 인사호환제한 등을 확보)
- 48.인권위 직원채용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 49.조사대상 기본권의 확장(10조에서 22조를 37조까지)
- 410.국회법 개정, 겸직위원회로 인권위원회 신설

5. 운영관행의 확충

- 5-1. 정부조직법상 독립기구로 특기되어 있으므로 행안부와 감사원, 기재부와의 관계 재설정
- 5-2. 인권개념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확대
- 5-3.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해석(18조)
- 5-4. 법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를 근거로 사실상 인권영향평가로 나아갈 수 있고, 제25조의 권고나 의견표명, 제28조의 의견제출, 제29조의 보고서 작성, 법 21조(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2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23조(청문회), 24조(방문조사) 등의 적극적 활용
- 5-5. 속기록 작성 공개, 의사의 실시간 중계
- 5-6. 협의의 위원회와 사무처와의 관계설정

이명박 정부하의 노동계 참여 정부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김태현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들어가며

민주노총은 멀게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참여 이후, 가까이 2000년 합법화 이후 정부위원회에 참가해왔다. 이는 민주노총이 바라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실현하기 위한 개입전략의 일환이었다. 한편으로 정부위원회에서 부딪치는 각종의 권위주의, 관료주의와 일방주의에 시달리면서 노동자의 입장에 서서 정부위원회에 개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정부에 들러리서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반성도 자주 하게 되었다. 특히 MB정부의 등장 이후 정부 위원회는 더욱 축소되거나 관료주도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역전환이 일어났기에 더욱 그러하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해온 그동안의 정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 제기와 더불어 고민지점을 제출하고자 한다.

1. 정부위원회의 존재목적과 위원회 구분

발제문은 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을 기존 계층제 관료조직이 갖는 폐쇄성, 비밀주의, 일방성, 권위주의 등의 문제점을 들고, 독립성과 합의성에서 정부위원회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기존 관료주도의 공무원계층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일방주의를 극복하고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기본 존재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측면에서 MB정부 하 정부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그 존재목적에 맞게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각종 사회보험은 노·사 및 국민의 보험료로 거의 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정부위원회의 운영과 관리와 관련해서 판단하면 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재정과 운영의 주체로서 노동자와 국민을 배제하는 관료주의의 극치를 이루는 것으로서 외국의 사회보험이 노, 사, 정 동수로 운영되거나 국민이 주인으로 운영하는 데 반해 우리 사회의 관료주도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현행법상 정부위원회는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두 가지로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분류가 과연 이런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예를 들어 200만명이 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국민의 건강보험의 수가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및 정책심의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 등은 모두 현행법상 자문위원회로 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위원회가 아니라면 자문위원회라는 일방적 구분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협약기구라는 노사정위원회도 역시 대통령자문위원회로 위상을 갖는다. 사회적 협약기구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구라는 형용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주창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민주적 거버넌스 문제와 연계해서도 현재의 정부위원회의 일률적 행정위, 자문위라는 구분은 정부위원회의 다양한 성격에 맞게 재정비되고 노동자와 국민이 성격에 맞게 국정에 참여하고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격에 따라 재편하고 편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실질적 사회적 협약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탈퇴를 하였으며, 아직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 현재 차원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신뢰를 가질 수 없는 단계이므로 민주노총은 노사, 노정, 노사정간의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러한 가운데 신뢰가 획득되어지고 협약의 안정성이 담보된 이후에야 상설적 대화기구의 설치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2. 정부위원회 운영의 주요 문제점

아래의 표는 2010년 말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토대로 짧게 요약해본 내용이다. 이 중에서 행정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재보험재심

사위원회 3개이며, 나머지는 모두 자문위원회로 분류된다. 참고로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정책심의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등의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표 1) 고용노동부 정부위원회 운영 및 노동계 참여현황 (2010.12)

명칭	기능	2010년 회의	위원 수		
			총계	당연	노동 (민주노총)
고용보험위원회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출석2,서면1	17	5	4(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확인,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관한 처분의 이의 사항 심사	출석23	15	2	2(1)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출석7,서면2	26	9	2(1)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 심의	출석1	11	2	1(0)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 및 의결	출석1	7	1	0
국가기술자격정책 심의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	출석1	26	6	1(0)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훈련법인 해산심사	-	10	1	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심판, 차별시정,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	수시	1626	-	근로자위원 전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 의결	출석10	15	-	5(2)
노사관계발전위원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시책 심의	-	14	4	2(0)
산업재해보상보험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재보험및예방 사업에관한중요사업심의	출석2,서면1	15	2	5(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	66회	57	2	12(6)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출석2,서면2	15	2	5(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청년고용촉진에관한주요사항 심의·평가	출석1	16	11	0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의결	출석12	27	1	9(4)

1) 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주요한 위원회에서 당연직 정부위원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합의제 성격의 위원회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고용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고용정책심의회는 당연직 정부위원이 9명으로 노동계 위원 2명에 비해 압도적이고, 고용보험위원회 역시 노동계 위원 4명에 비해 5명으로 많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경우 16명중 무려 11명이 정부위원이고 노동계 위원은 하나도 없고 청년대표도 없다.

공익위원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가 일방적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MB정부 들어서서 더욱 심화되었다. 약 200만명이 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살펴보자. 노, 사, 공익 3자동수로 구성되는 몇 안되는 위원회중의 하나인 최임위원회는 MB정부 들어서서, 기존의 공익위원 전원이 교체되었다. 과거 정부는 그나마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노, 사의 의견을 듣고 일부 반영이라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노동계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위 MB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전원 교체된 것이었다. 기존의 경제학자, 사회학자 중심에서 경영학, 가정대학 출신의 교수들로 많이 채워졌고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으로 치달아 사상 초유의 노, 사 위원 동반사퇴라는 사태를 빚고 말았으며 최저임금 결정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 공익위원이라면 차라리 정부위원으로 명기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

노동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익위원 구성에서 노동계 의견을 절대 배제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기존의 많은 공익위원들이 배제되고 정부입맛에 맞게 새롭게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위원회는 몇 안되는 노, 사, 공익 3자 동수 구성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최근의 복수노조 시행에서 어용노조 설립에 대한 노골적 지원 등등이 그러한 결과로 편파적 판정을 거듭하고 있다.

가입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축소하는 방향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동계 대표가 전체 26명중 2명, 고용보험위원회는 전체 17명중 4명으로 실질적으로 주요한 고용정책에 있어서 충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게 구성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위원회에서는 대표성을 명확히 갖는 노동계와 달리 애매한 지역가입자 대표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전혀 가입자대표성이 없는 인물로 교체하였다(경실련, 참여단체 등 배제). 최소한 농민, 어민 대표를 농어민 대중단체가 맡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도시지역가입자 대표(음식업중앙회, 공인회계사회, 소비자연맹 등)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대안으로는 노동자 등 가입자 단체가 주요한 위원회에서는 최소한 과반수를 점하게 하

고 분명한 대표권을 갖는 조직으로 구성할 것, 공익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가입자단체 등에 충분한 의견제출권이나 추천권을 보장할 것 등이 필요하다.

2) 위원회의 권한과 내실화 문제

<고용보험법 제 7조>는 고용보험위원회를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사업의 평가,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위원회는 심의권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노사는 위원회에서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순 있지만 최종 결정에서는 제외된다. 결국 결정권 없는 심의는 고용보험 정책 수립·집행의 형식적 자문역할로 노사의 역할을 하락시키고, 심지어는 노사가 정부의 절차적 명분을 정당화하는 의사결정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

2010년 행안부가 작성한 정부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고용보험위원회는 2009년 단 한차례 열렸으며, 주요 안건은 법에 규정된 기금운용계획 심의 절차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한 해 6조 이상의 예산의 사용과 집행을 관장하는 최고 심의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다. 더구나 고용보험위원회의 경우 다른 위원회와 달리 심의기능만 갖고 있다 보니 의사결정에 있어 노사의 참여도 제한적이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평균 격월로 열렸으며, 심의·의결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표 2> 사회보험의 정책결정기구 기능 및 회의운영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2009년)	기능
고용정책심의회	출석 2회, 서면 3회	심의·의결
고용보험위원회	출석 1회, 서면 1회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출석 9회, 서면 12회	심의·의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출석 7회	심의·의결

자료 : 행정안전부, 2010. 《2010년 정부위원회 현황》

회의에 있어서도 미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토론하기보다는 당일 회의석상에서 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즉석의 감상평이나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위원회가 형식적 들러리로 운영되는 것이다.

합의제 행정기관의 조직 운영의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라영재 /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 정부조직에서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는 논거가 외부 참여의 확대(김태룡, 2012)라고 하며, 위원회 조직이 만들어진 시기는 제2공화국 정부시기라고 함. 즉 행정의 민주성 강화의 문제임.
- 정부의 행정조직 형태가 전통적으로 위계적 관료조직에서 합의제 조직의 형태로 독립제 기관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임. 관료주의 극복과 지속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 문제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위원회를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의결위원회와 같이 헌법기관을 제외하고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행정기관적 성격의 정부위원회로 정의(이종수의, 2003; 박석희·정진우, 2004)하고 있음.
- 지난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언론과 학자들은 모든 정부위원회의 탄생배경, 역사,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위원회의 남설, 옥상옥의 중첩, 미개최(미활용)”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일정한 정도의 조직 통폐합, 정비와 제도개선은 필요하였음.
- 정부위원회의 조직형태가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부터 자문위원회를 모두 통괄하는 정부위원회의 기능, 권한, 조직(구조와 운영)을 모두 하나의 쟁점으로만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함
- 개선형 조직형태를 가지고 독립제로 운영하는 정부부처의 조직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부개혁의 역사와 배경에 의해서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정부위원회의 기능, 권

한,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설계 및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과거와 현재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하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선행연구와 이슈를 통해서 점검해 보고,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 사례로 하여 평가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¹⁾

2. 중앙행정기관형 정부위원회의 조직설립과 운영의 쟁점

- 박석희·정진우(2004) 연구에서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위원회명, 근거법령, 위원수, 위원장(직급), 상임위원수(직급), 사무기구(사무기구 책임자 직급, 사무직원수)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고, 기능적 독립성, 독자적 법률안 제출권 유무, 기관마다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의 위상 차이, 사무처의 인적 구성이나 조직정원의 차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이와 달리 윤태범 교수(2012)는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형 행정위원회의 관료주의화를 비판하고 상임위원의 관료출신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 어느 나라든 정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체제와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지배 하에서 생성되고 발전, 변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전쟁이나 경제위기, 자연재해와 같은 역사적 위기를 맞아 전통적인 정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조직을 만들거나 통폐합을 시도함. 또한 고유한 정부역할과 주요 기능이 변치 않는다면 전통적인 주요 기능적 역할은 그대로 놔두고 세부적인 권한과 책임, 예산, 인원 등의 변화 또는 강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새로운 규제기능과 같은 적극적인 정부역할이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독립규제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임.
- 물론 국가의 외부환경이 변화하여서 불가피하게 기존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폐합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권 집권초 정치적 의도의 정부조직개편이 국민의 입장에서 당초의 통폐합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1)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이후 논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공무원으로 들어가 현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편 후 2009년 2월 퇴직하였으므로 객관적 시각에서 조직운영을 볼 수 있겠는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나 자기가 소속했던 조직이기적인 시각보다는 시민 지향적, 객관적 학문적 시각에서 보려고 하였음.

-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과 청소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격상이 되어 위원회 조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위원회의 독립성은 강조된 결과로 보이나 실제 의사결정과 집행의 실효성은 확보하는데 그리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고(김동욱, 2008).
- 김동욱(2008; 30)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과거사위원회 등은 민주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직을 기존 조직에 병설하였고 큰 전략적 계획을 갖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 행정체제 마련보다는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한 조직이라고 지적함.
- 그래서 현 정부는 ① 대부주의, ② 기능분류와 관련성, ③ 성과위주로 운영하기 위한 책임소재, ④ 지방화와 민간주도를 정부설계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도 국가질서유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법무부 내의 기구로 개편안(김동욱, 2008;156-157)도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원처리를 하는 옴부즈맨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국가기관을 왜 설립하려고 하였는가의 역사성과 왜 이런 조직이 앞에서 지적한 윤태범(2012), 박석희 외(2004)의 지적처럼 법제정과 기관 설립 당시 배경과 정신을 탈각하고 운영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면밀히 평가해 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통합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하지만 조직구성과 운영의 문제도 더 면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함
- 그런 차원에서 ① 국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② 정부가 능률성이나 가치나 합법성 가치와 더불어 민주성, 형평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첩성의 원리, ③ 정부의 경제적, 사회적 규제와 조정에서 정부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의 요청에 의한 조직설립과 구성원리, ④ 합의제 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형 정부(행정)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능과 권한 부여, 적절한 조직구성을 하고 운영되었는지를 나누어서 재평가해야 할 시점임.

3. 국민권익위원회 사례

1) 통합의 문제

- 2008년 대통령인수위원회가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함 (2009 국민권익백서, 2010;3).
- 행정심판법에 의해 처리하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논의로 하고 통합 전후 기능과 역할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통합기관의 소기의 실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행한 백서나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등 외부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서만 살펴보면 고충처리 조사 및 처리현황은 증가하였고, 국가 청렴도는 정체 또는 약간의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현정부의 후반기 국정기조인 공정한 사회,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조직통합은 조직개편의 배경인 음부즈맨의 일원화를 통한 국민 권익증진이나 고충민원의 원스톱 서비스보다는 단순한 민원처리 건수의 양적 확대로 나타남. 즉 통합의 설계안인 총괄지원통제나 국가질서 유지기능을 통합하는 위원회로서도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한 권한과 기능이었지만 상징적 반부패 정책조정 기능은 사라져 버렸음. 즉 반부패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과 공직윤리의 강화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됨.
- 특히, 지난해 이어 2012년 현시점의 “공정사회”. “국민과의 소통”, “양극화 해소와 국민통합”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였고, 검경, 감사원 소위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문제가 조직개편의 쟁점으로 부각되는 추세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또 다른 명확한 기능과 조직 개편의 문제제기를 던져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운영의 쟁점

- 윤태범 교수(2012)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이전에도 소위 위원회의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 중 1명이 사무기구를 장악함으로써 실제로는 독임제와 같이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²⁾

- 박석희· 정진우(2004) 논문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권한과 기능이 준입법, 준사법이 주된 것인가 아니면 정책조정이나 행정집행이 주된 것인가로 기준으로 해서 ① 위원회 구성과 ② 위원회와 사무기구와의 관계, 특히 사무기구의 장의 위상, ③ 정부조직인 이상 직업관료제로 구성해야 하지만 전통적인 정부부처와 달리 조직 구성원의 출신배경, 전문성 등에서 다양성과 민주성을 적극 고려해야 함.
- 세부적으로 위원구성은 민주성의 원리에 따라서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추천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정치적 이해로부터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제척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함. 다만 시민사회에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민단체의 이념성 논쟁이 있는 현 시점에서 실현가능한 것인지 의문임.
- 그러나 대부분 중앙행정기관형 정부위원회의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의 추천과 권한, 역할이 독립제처럼 구성, 운영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권한 배분이 필요함
- 사무기구의 조직인력은 경력직 직업 공무원과 전문 자격과 민간 경력을 가진 신규직원이 적절하게 안배되는 것이 적합하고, 일부는 계약직으로 폐쇄적 공무원제를 극복할 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특히 사무기구의 장은 반드시 위원의 직급보다 1단계 낮게 구성하여 관료주의 병폐를 사전에 차단해야 함(국가인권위원회 사례)
- 전통적인 정부기관에 대한 보충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도록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위원회는 출범 당시 조사권 부재, 공직윤리와 연계 미흡, 부실한 공익신고자 보호와 결정적으로 공무원 출신으로만 초기 조직구성을 하여 시대적 개혁과제를 주도, 적극적 역할 다 하였다고 할 수 없음
 - 특히,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공직부패수사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공직윤리기능의 일원화, 장기적으로 감사원의 회계기능의 국회이관과 감찰기능과 공직윤리기능의 통합과 같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했음.
- 영미 등 선진국의 정부기관의 설립 및 개혁의 역사는 반부패를 위한 정부개혁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새로 재편되는 반부패 정부개혁기구는 1990년대 시민사회가 처음으로 주장한 「부패방지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공직윤리 통합³⁾, 정

2) 위원회 운영의 관료주의화 문제가 극명하게 나타난 사례로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의 문제가 아닌가 함

3) 지난 정부 후반기 행자부(현재 행안부) 소관의 공직윤리기능과 청렴위의 공직부패 기능을 통합하려는 시도는

부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를 주된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기구로서 재탄생해야 함⁴⁾

4. 맺으면서

-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되는 사회로 만들자는데 정파를 떠나 모든 정파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 같은데, 이 또한 정부 관료제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며, 비대한 경제권력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도 공정하고 능력 있는 정부라는 것임. 물론
- 정부운영이 위계적인 폐쇄적이고 직업공무원제에 의한 과도한 정책결정과 집행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 시민적 견제가 필요하고 공직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전제사항이고 참여민주주의를 보장을 위한 필수사항이임.
- 그런 차원에서 2001년 처음 부패방지법을 제정하는데 정치권력, 검찰 등 사정기관의 조직이기주의와 같은 기득권 세력의 반성,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의 2008년 통합의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새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정부윤리 및 정부개혁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물론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계급적 관료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 관료제하에서 위원회의 독립성, 민주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운영이 설계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⁵⁾

적절하며 인사기능은 제외한 복무, 공직윤리, 행동강령과 같은 공직윤리, 투명성 강화 기능은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해야 하는데, 독립제인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기는 부적절함

- 4) 최근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대안으로 공수처(가칭)의 문제는 새로운 반부패기구가 독립성, 민주성의 확립을 전제로 헌법학자들이 제기하는 위헌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속으로 두지만 고도의 수사 및 기소의 자율성을 부여하면 되고, 기소권의 검찰과 경합 문제제기를 위하여 10년 정도 한시적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5)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원리를 비교해 보고, 설립이후 시민사회의 적극적 견제와 협력의 정도만 보아도 알 수 있음

참고문헌

국민권익위원회. (2010). 2010 국민권익백서

김동욱. (2008). 새 정부조직 설계. 법문사

김태룡. (2012). 새한국행정론. 대영문화사

박석희 · 정진우. (2004). 합의제 행정기관 현황분석과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42권 제4호.

■첨부 <참여연대 작성 2011년 499개 정부위원회 세부현황>

참고자료 1) 행안부 작성 <2011 정부위원회 현황>(이하 행안부자료) : 국정감사 제출용

참고자료 2) 각 부처가 작성한 연도별 <소관 정부위원회 현황>(이하 부처보고서)

행안부 보고양식에 의한 공개한 부서와 축약본을 게시한 일부 공개 부서,
그렇지 않은 부서로 구분됨

※ 공개하지 않은 부서는 법령검색 사이트<로앤비>등을 참고, 최대한 주요사항 기입

※ 예산등의 ()는 연도별로 나온 부처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임. ()안이 최근
임

항목별 세부설명

1	소속	원 소속 위원회
2	주관	주관 행정부처 (주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 위원회들 중 다른 중앙부처에서 실무 관리하는 경우 있음)
3	명칭	여러 명칭으로 혼재되어 불리는 경우 있어 <행안부자료>의 명칭 인용
4	성격1(행정/자문분류)	행정위/자문위의 구분 대분류 <행안부 자료>에서 기입
5	성격2	심의, 의결 등 세부성격 <부처 보고서>에서 기입, 빠진 부서는 <행안부 자료>에서 기입
6	mb기간변화양상	<로앤비> 참고 자체 작성
7	근거법조항최초제정연도	<부처보고서>를 참고하여 <로앤비>를 통해 법령검색, 기입 *이유는 시행일만으로는 신설위원회 파악이 어렵기 때문임 (법조항 제정은 2007년인데 시행일은 2008년인 경우 등)
8	존속기한	<부처 보고서>에서 기입, 빠진 부서는 <로앤비>를 통해 법령 검색, 기입
9	2011예산(단위 천원)	<행안부 자료>에서 기입
10	2010 본회의 수	
11	분과수 2010	
12	2010 분과회의 수	
13	부처 소관위원회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보고서>항목의 기입: 일부공개는 축약본만 있는 경우, 홈페이지는 문서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공개로 함
14	부처소관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부처보고서>항목의 기입: 일부공개는 축약본만 있는 경우, 홈페이지는 문서파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공개로 함
15	보고서 작성시점	해당 <부처 보고서> 작성 시점
16	근거법령	<부처 보고서>에서 기입, 빠진 부서는 <로앤비>를 통해 법령 검색, 기입
17	주요기능	<부처 보고서>에서 기입
18	위원장	
19	위원 수	
20	위촉직 위원 현황	
21	분과	
22	연도별 경상비 예산	
23	연도별 경상비 집행액	
24	연도별 사업비 예산	
25	연도별 사업비 집행	
26	연도별 출석회의	
27	연도별 서면회의	

*지면의 한계로 위 표의 20번째 항목부터는 자료집에서 생략

참여연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에서 전체 엑셀파일 다운로드 가능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준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회의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95	없음	193,000	24	0	공개	공개	201012	고용보험법 제99조	고위공무원 (별정 나급,상임)	공무원	15	1	1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50,300	3	2	2	공개	공개	201012	고용보험법 제7조	고용노동부차관	공무원	17	5	1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94	없음	4,200	2	5	7	3	공개	공개	201011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	24(26)	9	15(1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자격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1	0			공개	공개	201011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	기획조정실장	공무원	9	1	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징계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97	없음		1	0			공개	공개	201011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 조의4	고용노동부 로기준국장	공무원	7	0	7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3,923	1	2	42		공개	공개	201011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	27(26)	6	21(2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심사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10	없음		16	1	7		공개	공개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24조의2	대학교수	민간인	15	0	15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발전위	자문위	심의	확대	2010	없음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5	민간인	민간인	14	4	1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심사위(행정법정)	자문위	심의	유지	1964	없음	7,680	3	1	0		공개	공개	2010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	고용노동부차관	공무원	15	2	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 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65	없음	138,505	66	0			공개	공개	2010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 조	고위공무원 (별정 나급,상임)	공무원	55	1	54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8	없음	7,715	2	2	0		공개	공개	20101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고위공무원	공무원	15	2	1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56	없음	28,865,154		7	45		공개	일부공개	201011	노동위법 제2조	장관급 (상임)	공무원	1626	0	162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촉진특별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0	1	0			공개	공개	20101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고용노동부장관	공무원	16	1(7)	15(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86	없음	843,124	8	2	4		공개	공개	201011	최저임금법 제12조	민간인	민간인	27	1	26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 성격2 자문분 양상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분과수 2010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심의위	자문위	자문	유지	2005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	공무원	고용노동부차관	미구성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훈련법인정비심사위	자문위	자문	유지	2007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	공무원	직업능력정책관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	상습범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60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5의4	공무원	공정위 사무처장	7	4	3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	소비자정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0	없음	7,200	1	1	5	3	자료없음	자료없음		소비자기본법 제23조	공통	공정거래위원 장, 대학교수	22	13	9
관세청	관세청	관세사자격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1,000	2		0		공개	비공개		관세사법 제6조의3	공무원	관세청차장	9	5	4
관세청	관세청	관세시정계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78	없음		3		0		공개	비공개		관세사법 제28조	공무원	관세청차장	9	9(7)	0(2)
관세청	관세청	관세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0	없음	16,800	4	4	0		공개	비공개		관세법 제124조	공무원	관세청차장	19(23)	5(9)	14
관세청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2	없음	4,200	5		0		공개	비공개		관세법 제85조	공무원	심사정책국장	29	12	17
관세청	관세청	원산지확인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2	1	0		공개	비공개		관세법 제236조의4	공무원	통관지원국장	10	5(6)	5(4)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과용도서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5	없음	1,144	58		0		공개	공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민간인	민간인	639	0	63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원소청심사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91	없음	1,917,572	14		0		공개	비공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공무원	위원장	7(8)	2	5(6)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원자격검정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78	없음			0			공개	미구성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공무원	학교지원국장	9	7(9)	2(0)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정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60	없음	1,776	1	2	2	10	공개	비공개		교육과정심의회규정	공무원	교과부제1차관	840(30)	2	28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운영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7	없음		3	0	0		공개	공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민간인	민간인	15	2	13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분과수 2010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국가핵융합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2,100	1	0	0		공개	공개	201012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5	6	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국사편찬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49	없음	7,160	2	0	0		공개	공개	20101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 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	국사편찬위 원장	16	2	14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1	없음	120,000	3	2	2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5	공무원	교과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 의회	자문위	단순 자문	신설	2011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7	공무원	기획단장(교 과부고위공무원 단)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기술사제도발전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	1	1		공개	공개	201012	기술사법 제3조의2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25	11	14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0	없음		0	0	0		공개	공개	201012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민간인	민간인	현재미 구성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뇌연구추진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8	없음		1	0	0		공개	미구성	201012	뇌연구추진법 제7조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15	4	11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대학교원융양상징등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3,600	2	0	0		공개	공개	20101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2	민간인	민간인	11	2	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대학실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8	없음		3	0	0		공개	비공개	201012	대학실심운영규정 제3조	민간인	민간인	9	0	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법학교육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9,000	3	0	0		공개	공개	20101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에 관한 법률 제10조	민간인	민간인	13	0	13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사이버대학실심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50,000	13	0	0		공개	비공개	201012	사이버대학 실심운영규정 제4조	민간인	민간인	9	0	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사회분쟁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1	3	36		공개	공개	201012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민간인	민간인	11	0	11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생명공학총질척심의회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95	없음		0	0	0		공개	공개	201012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공무원	교과부장관	17	8	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0	2	0	0		공개	공개	201012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 조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16	10	6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회의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 사 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70,000	31	4	공개	비공개	201012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 유도시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민간인	9	0	9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외부평가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80,000	2	3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국연구재단법15조3항	민간인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69	없음	0		0	공개	미구성	201012	원자력손해배상법 제15조	미구성	11	1	10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법 조합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0	공개	미구성	201012	원자력시설등의 방호및 방 사응급대대책법 제5조	공무원	교육과학기 술부 장관	11	11	0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원자력안전위	자문위	심의 의결	확대	1997	없음	5,924	3	5	공개	공개	201012	원자력법 제5조	공무원	교육과학기 술부 장관	8	1	7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인정기관심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15,600	6	4	6	공개	공개	20101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민간인	9	1	8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자격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20,000	2	1	2	공개	공개	201012	자격기본법 제8조	공무원	교육과학기 술부 장관	18	9	9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조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중앙교육진흥심의회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92	없음	0		0	공개	미구성	201012	교육진흥을 위한 특별 법 제13조	미구성				7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중앙연구교육진흥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5,000	0	0	공개	공개	201012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	공무원	교육과학기 술부 제1차관	14	3	11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중앙유아교육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0	공개	미구성	201012	유아교육법 제5조	공무원	교육과학기 술부 1차관	15	1	14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중앙특수교육진흥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20,000	1	0	공개	공개	2010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 법 제10조	공무원	교육과학기 술부 제1차관	15	7	8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중앙학교보건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0	공개	미구성	201012	학교보건법 제17조	민간인	14(0)	3(0)	11(0)		
교육과학기 술부	교육과학기 술부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천문법시행령4	호선	위원중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전문분류)	성격2 성격2(전문분류)	mb기 간편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광성교육진흥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2	없음	0	1		공개	공개	201012	광성교육법 제10조	공무원	교과부장관	16	12	4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학교도서관진흥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0	0	2	공개	공개	201012	학교도서관진흥법 제8조	민간인	민간인	9	0	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1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105의 6	호선	위원중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1,400	0	2	공개	공개	2010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한 법률 제7조	공무원	교과부제1차관	14	7	7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학지대출제도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5,000	0	3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49의3	공무원	교과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한국사정보화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3,56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사료의수집·관한민한국사 의 보급등에 관한 법률 19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핵심이공계인력선정위	자문위	자문	유지	2004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이공계인력 특별법 20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교육과학기술부 솔부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6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12					
국가과학기술 솔위	국가과학기술 솔위	간접비선출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3,000	1	2	공개	공개	2010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무원	과학기술정책기 획관	22	14	8
국가과학기술 솔위	국가과학기술 솔위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	자문위	단순 자문	신설	2011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 에 관한 규정 26					
국가과학기술 솔위	국가과학기술 솔위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13	자료없음	자료없음		과학기술기초법 152					
국가과학기술 솔위	국가과학기술 솔위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과학기술기초법 152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위	자문위	자문 심의	유지	2005	없음	30,740	1	3	공개	공개	201104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	공무원	국가보훈처장	32(31)	11	21(20)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6	없음	32,274	0	17	공개	비공개	20110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무원	국가보훈처장	15	8	7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 본과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84	없음	1,226,000	264	5	219	공개	공개	비공개	20110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	공무원	고위공무원	60	5	55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자문위	심의의결	통합	2009	없음	5,120	4	0	4	공개	공개	공개	201104	보훈기금법 제10조	공무원	국가보훈처장	17	9	8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자문위	자문	유지	2004	없음	0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19	공무원	인권위 사무총장			
국무총리	국방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	행정위	행정	신설	2008	없음	12,183,317	7	3	17	공개(홈피)	공개	자료없음	수시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간인	민간인	11	4	7
국무총리	환경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정부지원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3,00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법 제20	공무원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0	없음	없음	1	2	34	공개	공개	비공개	201106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무원	국무총리	13	7	6
국무총리	통일부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	행정위	행정	신설	2010	없음	3,965,000	1	1	5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4	공무원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96	없음	650,000		0		공개	공개	비공개	201106	거창사건 등 관련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무원	국무총리	16	5	11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4	2011.9.29	없음		0		공개	공개	비공개	201106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예관법 제20조	공무원	행안부 제2차관	10	5	5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79,670	5	5	9	공개	공개	공개	20110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민간인	최창휘	17(18)	5	5 12(13)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국재개발협력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57,000	2	3	4	공개	공개	공개	201012	국재개발협력위 규정	공무원	국무총리	21	15	6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경기대회지원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없음		1		공개	공개	공개	20100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	공무원	국무총리	20	20	0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기업도시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없음	2	0		공개	공개	자료없음	201108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9조	공무원	국무총리	24	12	12
국무총리	통일부	남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회	행정위	행정	유지	2007	11년중사업종결	1,733,000	11	2	22	공개	공개	자료없음	201009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남북피해자 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민간인	대희교수	9	3	6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준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분과수 2010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위	행정위 (과거사)	행정	유지	2004	없음	427,350			5	6	2	공개	비공개	201106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3조	공무원	국무총리	16	9	7		
국무총리	농림수산업 장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403,000	1	0				공개	공개	200912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공무원	국무총리	21	12	9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간제동원피해 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 자지원	행정위 (과거사)	행정	신설	2010	2011.12.3 1(6개월 위 연장)	95,794,057	13	4	5	35	5	공개(총피)	공개(총피)	201106	대일항쟁기간제동원피해 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민간인	차관급	11	3(4)	8(7)		
국무총리	문화체육 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2014.12.3 1	286,426	3	2	2	2	공개	공개	공개	201006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 위 규정	민간인	세계문화포럼이 사장	29	10	19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및내륙개발 진위	자문위	심의	확대	2007	없음		1	1	0		공개	공개	공개	201106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21조	공무원	국무총리	30	23	7		
국무총리	문화체육 관광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	행정위 (과거사)	행정	유지	2004	없음			0			공개(총피)	공개(총피)	자료없음	수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공무원	국무총리	15	7	8		
국무총리	대검찰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티베이스관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심의회	행정위 (과거사)	행정	유지	2000	없음	8,798,000	37	5	58		공개(총피)	공개(총피)	공개	201106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민간인	김상기	9	0	9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바이오안전성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1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영유아보육법 제5조	미구성						
국무총리	문화체육 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행정위	행정	유지	2007	없음	4,033,000	7	4	5	5	공개	공개	공개	201006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제4 조	민간인	대학교수	14	4	10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6	없음		2	1	2	2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공무원	국무총리	29(28)	14(13)	15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2	3	9	4	공개	공개	공개	2010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 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	국무총리	24	12	12		
국무총리	국방부	상징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회	행정위 (과거사)	행정	유지	2004	없음	40,218	2	2	2	2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상징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민간인	변호사	12	6	6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자문분류)	성격2 성격2 자문분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행정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세민금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412,000	2	3	2	공개	공개	201012	세민금사인 축진을 위한 특 별법 제49조	공무총리, 민간 인	25	11	14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서해5도지원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0	공개	공개	201106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7조	국무총리	14	14	0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710,00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수도권정비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82	없음		2	2	1	공개	비공개	20110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	국무총리	14(18)	14(12)	0(6)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189,680	1	9	5	공개	공개	201012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	국무총리	19	9	10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신발전지역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0	공개	비공개	200909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 자촉진특별법 제22조	국무총리	23	13	10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1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동복지법 제4조의2	국무총리	현재미 구성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조정회의	자문위	심의	유지	2002	없음	2,400	1		0	공개	비공개	201012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국무총리	15	12	3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어수세계박람회지원 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8	2013.12.3 1	0	4	0	0	공개	공개	200906	2012어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22조	국무총리	20	20	0	
국무총리	법무부	외국인정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4	3	4	자료없음	자료없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8조	국무총리	22	15	7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 솔부	원자력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58	없음	2,152	1		1	공개	공개	201012	원자력법 제3조	국무총리	10	3	7	
국무총리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1		0	공개	공개	201109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 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무총리	20	10	10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 솔부	유아교육보육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0		0	공개	미구성	201012	유아교육법 제4조	미구성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진흥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0	1		1	공개	비공개	201106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8조	국무총리	25(30)	8(8)	17(22)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해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0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27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국무총리	27	14	13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경경지역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확대	2000	없음	0	0	0	공개	비공개	27(14)	경경지역지원법 제5조	국무총리	17(10)	10(4)	0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정보통신기반보호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0	2	0	공개	공개	12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3조	국무총리실장	12	12	0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	자문위	의결	유지	2006	없음	890,000	9	1	0	공개	공개	15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국무총리	15	4	11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제4.3사건진상규명및 상자명예회복위	행정위 (과거사)	행정	유지	2000	없음	2,638,024	1	2	1	공개(홈피)	공개(홈피)	20	제4.3사건 진상규명 및 수시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 법법 제3조	국무총리	20	8	12
국무총리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6	없음	577,000	2	0	0	공개	공개	23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 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7조	국무총리	23	18	8
국무총리	여성가족부	중앙건강장정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0	0	공개	비공개	13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	국무총리	현제미 구성 (13)	13	0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중앙민우협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75	없음	0	0	0	공개	비공개	21	민법위기본법 제6조	국무총리	21	15	6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중앙인권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1	3	0	공개	비공개	21(2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9조	국무총리	21(23)	21(23)	0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중앙경제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8	없음	44,360	12	0	0	공개	비공개	9	공무원징계령 제3조	행정안전부장관	9	8(7)	1(2)
국무총리	지식경제부	중저준위방사선편제기물 유 치지역 지원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0	0	0	공개	공개	18	중저준위방사선편제기물 유 치지역의 유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무총리	18	12	6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침단의료복합단지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1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19	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27조	국무총리	19	9	10
국무총리	문화체육관 광부	콘텐츠산업진흥위	자문위	심의	확대	2002	없음	0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19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진법 제5조	국무총리	19	9	10
국무총리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 위	행정위 (과거사)	행정	유지	2004	없음	45,692	12	2	24	공개(홈피)	공개(홈피)	1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 한 법률 제4조	민간인	13	4	9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준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회의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위	행정위 (과거사)	행정	유지	2007	없음	349,000	4	4	12	자료없음	자료없음	민간인	민간인 보호사	15	5	10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핵안보정상회의준비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3	핵안보정상회의준비규정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행정협외조정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0	없음	6,700	1	2	2	공개	비공개	201106	지방자치법 제168조	이영희	8	4	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1,028,000	4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9조	국민권익위 장	7	2	5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84	없음	841,000	46	3	70	자료없음	자료없음		행정심판법8	국민권익위 부위 위원장				
국방부	국방부	국방개혁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1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 조	국방부장관	16	13	3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군사기밀및군사시 설보호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군사기밀 및 군사시설보호 법 제15조	국방부 장	9	9	9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67	없음		3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국가배상법 제10조	국방부 장관	7	1	6	
국방부	국방부	국방정보화지원협의체	자문위	단순 자문	신설	2010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지원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2					
국방부	국방부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89	없음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 12조	국방부 장관	9	5	4	
국방부	국방부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75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보안관찰법시행령 32					
국방부	국방부	군인복지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3,818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	국방부 장관	10	7	3	
국방부	국방부	군인연금어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4	없음	7,200	12	1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군인연금법 제10조	국방부 장관	5	3	2	
국방부	국방부	군인연금여제심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94	없음	5,600	2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군인연금법 제5조	국방부 장관	9	6	3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전문분류)	성격2 성격2(전문분류)	mb기 간편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 본과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국방부	국방부	군채임용영기관운영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24,720	2	1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군채임용영기관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무원	국방부차관	15(9)	8(5)	7(4)
국방부	국방부	군치료감호심의위	전문위	의결	유지	2005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치료감호법50					
국방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48,730	8	3	33		공개(홈피)	비공개	수시	방위사업법 제9조	공무원	국방부장관	19	12	7
국방부	국방부	봉급기준조사위	전문위	단순 전문	유지	1973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군인보수법 7					
국방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2,700	1	4	9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유해발굴 감식단장	공무원	유해발굴 감식단장	10	6	4
국방부	국방부	퇴직급여금지금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1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	국방부차관	8	8	0
국방부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87	없음	64,000	48	1	5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공무원	전략자원 관리실장	300	3	297
국방부	국방부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 위	전문위	의결	유지	2005	없음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2	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 미구성					
국세청	국세청	국세심사위	전문위	의결	유지	1974	없음	81,000	44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108	국세기본법 제66조의2	공무원	국세청차장	25(26)	7(8)	18
국세청	국세청	국세통계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000	1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108	국세기본법 85	민간인		9	4	5
국세청	국세청	귀속재산소청심의회	전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5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귀속재산처리법 39					
국세청	국세청	기준경비(울)심의회	전문위	심의	유지	2002	없음	1,100	1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1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공무원	국세청차장	16(15)	5(4)	11
국세청	국세청	비상징주식평가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18,000	15	6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1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2	공무원	과장	30	9	21
국세청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18,000	1	1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108	세무사법 제3조의2	공무원	국세청장	12	6	6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회의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국세청	국세청	주류관정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9	없음	900	1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108	공무원	공무원	국세청 법안심세국장	7	4	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간정평가시정계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5	0		공개	자료없음	20110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민간인	이성룡 변호사	9	3	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설기계수급조절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0		공개	비공개	201108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3	공무원	국토부1차관	13	6	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건축사자격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64	없음		2	0		공개	비공개	201006	건축사법 제16조의2	공무원	국토부 기획조 정실장	20	3	1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골재수급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4	없음		1	0		공개	비공개	200909	골재취법 제11조	공무원	국토부1차관	13	7	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간정보침체개혁의회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9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공토지비축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9	없음		1	0		공개	비공개	201109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 률 제7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13	8	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역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99	없음			1	4	공개	공개	201012	항공법 제38조의3	공무원	국토부 항공정 책실장	15	13	2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인중개사시험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94	없음		1	0		공개	공개	20090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상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4조의2	공무원	국토부 토지정 책관	7	1	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공제분쟁조정위	자문위	의결	유지	2000	없음		4	0		공개	공개	2011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70조	민간인	김국기(경희대 의과대학 신경 외과 교수)	15	1	1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신기술심사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10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9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 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8	없음		5	2	2	32	공개	비공개	20110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 조	민간인	대학교수	40	0	4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부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9	없음		2	7	10	공개	비공개	200909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30	15	1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협 의회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5	없음		1	0		공개	비공개	200906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시 행령 제13조	공무원	국토부 종합교 통정책관	30	30	0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자문분류)	성격2 성격2(자문분류)	mb기 간편화 양상	근거법조 원칙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인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위	자문위	심의	확대	1999	없음		5	0		공개	공개	201108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25	13	12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기물류정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3		공개	비공개	200906	물류정책기본법 제17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19	10	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가지명위	자문위	심의 의결	확대	1980	없음		3	0		공개	비공개	20110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민간인	이기석 대한민 국 학술원 서울 대 명예교수	29	11	1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2012.12.3 1			0		공개	비공개	201008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 규정	공무원	국토부제2차관	20	4	1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케도건설심의위	자문위	의결	신설	2009	없음		1	0		공개	자료없음	201108	케도운송법 제17조	공무원	광역도시철도과 장	30	4	2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도로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3	없음		1	0		공개	비공개	201108	도로법 시행령 제9조	공공	교통정책실장/ 아주대오영택교 수	20	5	1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독도지속가능이용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1	0		공개	비공개	200908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12	8	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9	없음		3	0		공개	비공개	201012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 한 특별법 제33조	민간인	대학교수	30	7	2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9	없음			0		공개	자료없음	201107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규 정 2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		1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66	없음	10,000	10	1	1	공개	공개	2011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무원	국토부 1차관	19	13	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상공간건설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6	없음		2	12		공개	비공개	201108	수도권상공간건설촉진법 제7조의3	공무원	국토부 서울지 방항공정장	78(77)	5(6)	73(71)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신항만건설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6	없음			3	1	공개	공개	200906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0조	공무원	국토해양부 항 만정책관	45	15	3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연계승수사업추진협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6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연안여객선고객만족도평 가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해운법 9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자격2 자문분류)	성격 1(행정/자격2 자문분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용산공원조성추진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0	0	0	공개	공개	201109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7조	공통	국토부장관, 호 선 1명(미정)	25	8	1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자문 위	자문위	단순 자문	신설	2008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 관한법률8	민간인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관리위	자문위	의결	신설	2009	없음	0	4	0	공개	자료없음	201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9조의2			15	2	1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재활시설운영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8	없음	0	5	3	공개	자료없음	201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34조	민간인	인택수 진감사 원국장	15	2	1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관리사보시행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1	0	공개	자료없음	201109	주택법 제56조의2	공무원	국토부고위공무 원	7	2	5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73	없음	0	3	0	공개	비공개	200912	주택법 제84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18	12	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8	없음	0	2	32	공개	공개	201108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공무원	국토부 건설수 자원정책실장	300(363)	5	295(35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건설광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9	없음	0	3	0	공개	비공개	201108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공무원	국토부 건설수 자원정책실장	15	5	1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72	없음	0	8	3	1	공개	자료없음	201008	건축법 제4조	공무원	국토부 기획조 정실장	70	4	6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0	13	2	28	공개	비공개	201108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민간인	대학교수	30	4	2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부동산평가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89	없음	3,000	0	6	0	공개	공개	201008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무원	국토부 1차관	18	6	12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3	0	공개	공개	201108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 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21	2	1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2,000	2	2	0	공개	자료없음	201108	연안관리법 제30조	공무원	국토부 2차관	19	9	1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지적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76	없음	0	9	0	공개	비공개	20110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공무원	국토부 국토정 보정책관	10	2	8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62	없음	502,000	17	0	0	공개	공개	20110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9 조	국토부장관	9(14)	2	7(12)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하천관리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0	3	5	7	6	공개	201108	하천법 제87조	국토해양부 건설지원정책실 장	50	10	4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중앙환경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1	없음	1,000		3	2	6	공개	201108	환경법 제4조	국토부 2차관	35	21	14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중앙해상수난구조대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공개	공개	200906	수난구조법 제11조의2	해양경찰청장	15	11	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철도산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0	3	1		공개	공개	20090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국토부 장관	21	10	1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친수구역조성위	자문위	의결	신설	2010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3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타당성평가)심사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2	1	0	공개	자료없음	200909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5 조	국토부 장관	17	10	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하지심사분쟁조정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300,000	2	2	5	공개	비공개	201108	주택법 제46조의2	국토부 주택토 지실장	15	2	1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항공안전협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2	없음	0	12	0		공개	공개	20110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	국토부장관	13(16)	11(12)	2(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1	0		공개	공개	201108	항공법 제2조의6	국토부장관	20	7	13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	행정위	행정	유지	2006	없음	950,000		2	9	6	공개	201108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대학교수	12(11)	1	11(1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발전위	자문위	심의	축소	2002	없음	0		4		공개	비공개	201108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7조	국토부장관	23	13	10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해외건설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0	2	2	0	공개	자료없음	201108	해외건설촉진법172	국토부차관	15	6	9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 수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 합도시건설 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 진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2	4	공개(홍피)	공개(홍피)	수시	신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	공무원	국토해양부장관	24	10	14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혁신도시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1	1	1	공개	자료없음	20110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공무원	국토부장관	29	20	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훼손지복구사업협의회	자문위	의결	신설	2009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 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4						
금융위	금융위	공인회계사시험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66	없음	58,41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6조	공무원	감관위원장				
금융위	금융위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 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22	1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공무원	금융위부위원장	6	2	4	
금융위	금융위	공인회계사징계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97	없음		2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인회계사법 제48조	공무원	금융위부위원장	6	4	2	
금융위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270,000		2	30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	공통	금융위원장/ 민간인	8	2	6
금융위	금융위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 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2	없음	11,000		3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0 조	공무원	금융위부위원장	8	6	2
금융위	금융위	금융중심지추진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1,250	2	3	2	자료없음	자료없음		금융중심지법 제6조	공무원	금융위위원장	27	17	10
금융위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42,000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보험업법 163					
금융위	금융위	시장효율화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	2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예관한 법을 제14조	민간인	민간인	7	7	7
금융위	금융위	증권신설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97	없음	87,000	22	0		공개(홍피)	공개(홍피)	수시	금융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9조	공무원	증권신설위원 장	5	1	4
기상청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5	없음	8,173	1	2	1	자료없음	자료없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공무원	기상청장	20	14	6
기상청	기상청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 협의회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8	없음	8,000	2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지진재해대책법9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양상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75,000	12	1	3	16	공개	20110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8조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17	8	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97	없음			0			공개	201108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 조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12	10	2	
기획재정부	통계청	국가통계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62	없음	42,572	1	1	5	9	공개(홈피)	수시	통계법 제5조의2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27	17	1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9,000	5	0			공개	201108	국가회계법 제8조	공무원	기재부2차관	14	5	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세에규심사위	자문위	의결	확대	1976	없음	3,200	6	0			공개	201108	국세기본법 18	공무원	세제실장	22	6	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9	없음	4,800	1	2	1	3	1	공개	201108	국유재산법 제26조	공무원	기재부2차관	15(19)	7(9)	8(10)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채계약분쟁조정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97	없음	4,999			1		공개	2011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9조	공무원	기재부 기획조 정실장	14	9	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운영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6	없음			2	0		공개	201108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 조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12	12	0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무역조정지원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공개	201010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13	7	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4	없음	8,500	4	1	0		공개	20110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5조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18	10	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	행정위	행정	유지	2004	없음	708,000	4	1	2	6	공개	20110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 조	공무원	기재부2차관	21	10	1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담금융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2	없음		1	7	0		공개	201108	부담금관리기본법 제9조	공무원	기재부2차관	10(13)	4(5)	6(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부동산가격인정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3	없음			0			공개	201108	소득세법 제104조의2	공무원	기재부1차관	12	6	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성과표시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자료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 과평가 및 성과권리에 관한 법률 6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자문분류)	성격2 성격2(자문분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무시장계위	자문위	의결	유지	1961	없음	1,500	2	0	공개	공개	201108	세무사법 제17조	공무원	기재부 세제실 장	8	5	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예산신상과금신사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99	없음	5,906	1	0	공개	공개	201108	국가재정법 제49조	공무원	기재부2차관	11	6(5)	5(6)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83,700	3	0	공개	공개	201108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 규정	공통	기재부장관	26(28)	13	13(1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정위험관리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11	2015.12.3 1	0	2	0	공개	공개	201108	재정위험관리위 규정	공무원	기재부장관	19	12	7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1998	없음	17,400	3	2	0	공개	공개	201108	국가재정법 제10조	공무원	기획재정부장관	59	36	23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청산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51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귀속재산처리법 8 / 귀속재 산처리법시행령 18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특정외래품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61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특정외래품심사위 규정	공무원	재무부 세정차 관보	9	9	0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국가식생활교육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8조	공통	농식품부장관, 민간인	20	13	7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기르는어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0	0	공개	공개	200912	기르는어업육성법제3조	공무원	농식품부 2차관	15	3	12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가소득안정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6,200	0	0	공개	공개	20091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	농식품부장관	20	5	15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9	2014.10.1		5	1	5	공개	공개	200912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 법 시행령 제5조	공통	농식품부 제1차 관, 민간인	35	5	30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63,834	1	3	8	공개	공개	20091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조	민간인	대학교수	53	20	20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9	0	공개	공개	200912	농어업재해대책법 제5조	공무원	농식품부 2차관	20	17	3	
농림수산식 품부	농림수산식 품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1	2	1	공개	공개	200912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	공무원	농식품부 1차관	21	6	15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자문 분류)	성격2 성격2 (분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준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유전자원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공개	공개	200912	농업유전자원법 제15조	공무원	농식품부 1차관	14	1	13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법위원회	자문위	자문	유지	2007	없음		0	0	공개	미구성	20091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미구성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16,984	3	4	공개	공개	200912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민간인		29(28)	11(10)	1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의사국가시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7,350	0	0	공개	공개	200912	수의사법시행령제3조	공무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9	1	8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안전진흥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5,400	3	2	공개	공개	200912	식품안전진흥법 제5조	민간인	대학교수	28(29)	8	20(2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	자문위	의결	유지	2003	없음	8,400	0	0	공개	공개	200912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공무원	농식품부 수산정책관	15	1	1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2	없음	2,162	0	0	공개	공개	200912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7조	민간인	민간인	15	0(5)	15(1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발전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0	공개	미구성	200912	원양산업발전법 제5조	미구성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이력관리제운영협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0	0	공개	공개	200912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무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17	1	16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4,000	0	0	공개	공개	200912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공무원	농식품부장관	14	4	1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증자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7	없음	0	1	1	공개	비공개	200912	증자산업법 제158조	민간인	대학교수	14	2	12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증상기술훈련협의회	자문위	자문	유지	2003	없음	7,700	5	21	공개	공개	200912	가축진염예방법 제4조	공무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59	2	57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양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2,850	0	0	공개	공개	200912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법 제15조	공무원	농식품부장관	20(15)	1	19(14)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양수산물관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4,00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수산물관리법 54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자문분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농림수산식 물부	농림수산식 물부	중앙수산조정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1963	없음	0	2	0	공개	공개	200912	수산업법 제86조	공무원	농식품부 2차관	19	3	16	
농림수산식 물부	농림수산식 물부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97	없음	0	0	0	공개	공개	200912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 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 법 제7조	공무원	농식품부장관	14	4	10	
농림수산식 물부	농림수산식 물부	지리정보시보호심판위	자문위	의결	신설	2011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농림수산식 물부	농림수산식 물부	축산물위생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8	없음	5,000	6	4	1	공개	공개	20091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의 2	민간인	대학교수	50	3	47
농림수산식 물부	농림수산식 물부	축산물진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9	없음	38,000	0	0	공개	공개	200912	축산법 제4조	공무원	농식품부 2차관	25	6	19	
농림수산식 물부	농림수산식 물부	품질보호심판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97	없음	0	0	0	공개	비공개	200912	축산법 제91조	공무원	농식품부 녹색 성장정책관	8	2	6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성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6	없음	4,700	3	0	공개	공개	201011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공무원	농촌진흥청 차 장	20	6	1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6	없음	2,400	2	0	공개	공개	201011	비료관리법 제4조	공무원	농촌진흥청 차 장	14(15)	7	7(8)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자재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2013.1.1	22,000	4	2	공개	공개	201011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2	민간인		14(20)	7(8)	7(12)	
대통령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	자문위	자문	유지	1999	없음	3,594,400	2	2	8	1	공개(홍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법 제3조	민간인	대학교수	10	2	8	
대통령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242,000	2	3	3	15	공개(홍피)	건축기본법 제13조	민간인		29	16	13	
대통령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	자문위	자문	신설	2008	없음	3,246,000	4	4	4	4	공개(홍피)	국가경쟁력강화위 규정	민간인	민간인	39	3	36	
대통령	문화체육관 광부	국가브랜드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8,762,000	3	5	16	4	공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 한 규정 제10조	민간인	대학교수	47	13	34	
대통령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4	없음	12,960	2	5	2	자료없음	자료없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민간인	연세대의대학교수	20	6	14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대통령	교육과학기술 솔부	국기우주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3	0	공개	공개	201012	우주개발진흥법 제6조	공무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12	8	4	
대통령	교육과학기술 솔부	국기인적지원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7	없음		7	7	공개	미구성	201012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7조	대통령	대통령	24	11	13	
대통령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전략위	자문위	심의	확대	1995	없음	216,300	1	3	공개(홈피)	공개(홈피)	201106	국가정보화기본법 제9조	공동	국무총리, 대학 교수	31(30)	16	15(14)	
대통령	국무총리실	국민원로회의	자문위	단순 자문	신설	2009	없음	150,438	3	6	공개(홈피)	공개(홈피)	수시	국민원로회의규정	공동	국무총리, 민간 인2	55	1	54	
대통령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	행정위	의결	유지	1998	없음	958,000	23	2	공개	공개	201012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공동	국무총리, 대학 교수	25	7	18	
대통령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6,906,000	3	4	1	공개(홈피)	공개(홈피)	수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	공동	국무총리, 민간 인	48	18	30
대통령	문화체육관 광부	도시관광정책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155,000	2	4	4	공개	공개	201006	도시관광법 제12조	민간인		27	10	17
대통령	기획재정부	미래기회위	자문위	단순 자문	신설	2008	없음	2,520,000	2	5	7	공개(홈피)	공개(홈피)	수시	미래기회위 규정	민간인	민간인	28	2	26
대통령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2,814,000	22	4	180	공개(홈피)	공개(홈피)	201106	사회통합위 규정	민간인		48(51)	16(18)	32(33)
대통령	문화체육관 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2026.12.3 1	190,000	7	3	2	공개	공개	20100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특별법 제29조	민간인		27	13	14
대통령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촉진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2013.6.1	700,000	18	4	70	공개(홈피)	공개(홈피)	수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17조	민간인		10	2	8
대통령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2014.12.3 1	3,955,000	3	3	13	공개	비공개	201106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민간인		27	3	24
대통령	지식경제부	지역발전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2,924,000	2	5	6	공개	공개	20101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 조	민간인	교수	26	9	17
문화재청	문화재청	고도보존심의위	자문위	심의	축소	2004	없음	34,000	2	0	공개	공개	201012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3 조	공무원	문화재청장	18	6	12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문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8,000	1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문화재보호기금법7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62	없음	450,000	9	85		공개	공개	200904	문화재보호법 제4조	민간인	80	0	8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지원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72	없음	1,300	1	2	0	공개	공개	201006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공무원	10	3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93,600	1	3	1	공개	공개	201006	국어기본법 제13조	민간인	47	13	3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자료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3,000	1	3		자료없음	자료없음		도서관법시행령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취소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30,000	2	1	0	공개	공개	201006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민간인	10	0	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어른진흥조사서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2016.1.31	565,000	13	1	12	공개	자료없음	2010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제17조(09.7.31)/동법 시행령 제12조 1항("10.1.27)	민간인	9	0	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진흥회의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4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음악산업진흥지원심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무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 자문위	자문위	단순 자문	신설	2008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9조	미구성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광고운영협의회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7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정홍보입문운영 규정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4	2016.12.31	607000 12440000	12	3	8	공개	공개	201006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7조	민간인	9	0	9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준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정책위원회	자문위	의결	신설	2010	없음	500,000		4		자료없음	자료없음	콘텐츠산업진흥법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육원자격심사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95,000	4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어기본법 시행령 13조3항	민간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정상황평가위원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11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방송법 35의2	민간인	위촉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성심사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공개	공개	201012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4	공무원	방송위원회위원장	8(2)	6(7)	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자문위	심의	확대	2005	없음	20,700	4	0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35조의2	공무원	방송위원	14	3	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2013.12.31	19,500	2	1	3	공개	공개	201012 디지털전환특별법 제4조	공무원	방송위원장	20	8(9)	12(1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112,800	17	2	26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35조의4	민간인	대학교수	9	0	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운용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20,160		0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39조	공무원	방송통신위원	10	1	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정책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42,000	6	0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35조의3	공무원	방송위원	7	1(0)	6(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26,000	9	0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31조	공무원	방송위원	7	1(0)	6(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각권보장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30,000	2	0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76조의2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7	1(0)	6(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지불관리처리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48,680	10	0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35조	공무원	방송위원	9	1(0)	8(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심의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5,000	2	0		공개	공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36조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5	8	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0		공개	공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6조	민간인	대학교수	9(10)	2(1)	7(9)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법송통신위	법송통신위	(정보부총관리체계인증기 관)심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48					
법송통신위	법송통신위	지역방송 발전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48,000	10	2	2	공개	공개	201012	방송법 제42조의2	공무원	법무부차관	5	2	3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감항인증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2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 예관한법률7					
법무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69	없음	18,800	12		0	공개	비공개	20110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 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9	4	5
법무부	법무부	중증인장계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61	없음	1,800	3		0	공개	비공개	201106	중증인법 제85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7	4	3
법무부	법무부	국적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201106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공무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장	21	7	14
법무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2,000			0	공개	비공개	20110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5조	공무원	법무부장관	19	10	9
법무부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공개	비공개	201106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4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7	2	5
법무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 심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3,150			0	공개	비공개	20110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7 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15	1	14
법무부	법무부	법교육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4,820	2		0	공개	비공개	201106	법교육지원법 제4조	민간인	대학교수	13(12)	4(5)	9(7)
법무부	법무부	감찰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5	없음	3,600	3		0	공개	비공개	201106	법무부감찰위 규정	민간인	민간인	9(8)	0	9(8)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67	없음	2,800	4		0	공개	비공개	201106	국가배상법 제10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7	2	5
법무부	법무부	법무지문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1972	없음	10,000	4	8	81	공개	비공개	201106	법무지문위규정	민간인	변호사	16	0	16
법무부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7,200	2	1	1	공개	비공개	201106	변호사시험법 14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15	1	14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법무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49	없음	4,500	2	2	0	201106	변호사법 제92조	공무원	법무부장관	9	3	6
법무부	법무부	보안관찰처분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89	없음	1,600	3	0	0	201106	보안관찰법 제12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7	3	4
법무부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89	없음	21,000	60	152	0	20110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공무원	고검차장검사	45	30	15
법무부	법무부	사면심사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7	없음	6,000	1	0	0	201106	사면법 제10조의2	공무원	법무부장관	9	5(4)	4(5)
법무부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2017.12.3 1	4,800	1	0	0	201106	사법시험법 제14조	공무원	법무부장관	13	3(2)	10(11)
법무부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	자문위	의결 신설	신설	2009	없음	0	0	0	0	201106	외국법자문사법 제40조 제 1항	공무원	법무부장관	9	2	7
법무부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8	없음	2,000	2	0	0	20110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6(8)	3	3(5)
법무부	법무부	주택임대차위	자문위	심의 신설	신설	2009	없음	2,000	1	0	0	20110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9	5	4
법무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유지	2005	없음	16,416	12	0	0	201106	치료감호법 제37조	공무원	법무부차관	9	2	7
법제처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유지	2005	없음	154,568	46	0	0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7조 의2	공무원	법제처장	102	42	6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	자문위	심의 신설	신설	2011	없음				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유지	2002	없음	9,800	3	12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간인	민간인	78	4	7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신설	2008	없음		3	1	0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3	민간인	변호사	9	1	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조정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0	없음	11,340	10	63	0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공무원	건강보험정책관	35	2	33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0	없음	31,340	8	11	3	공개(총피)	공개(총피)	수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25	3	2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가건강진단위	자문위	심의 의결	신설	2008	없음	3,000	2	5	5	자료없음	자료없음		건강진기본법 제8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15	5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가보존포지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제34 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 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12	7	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가암관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1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암관리법 제4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14	5	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5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15	8	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7	없음	118,000	6		0	공개(총피)	공개(총피)	수시	국민연금법 제103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20	6	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8	없음	8,500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민연금법 제5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20	1	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6	없음	18,840	11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민연금법 제111조	공무원	연금정책관	7	1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간금지원협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87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모자보건법 제6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15	2	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5	없음		8	7	9	33	자료없음	자료없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6조	민간인	대학교수	20	5	1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4	없음	5,00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	18	9	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62	없음	15,680			6	3	자료없음	자료없음	식품위생법 제57조	민간인	대학교수	99	6	9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1,036,000	11		5	7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료법54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전문분류)	성격2 성격2(전문분류)	mb기 간편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연계급여심의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90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9	7	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11	없음	0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료법시행령3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11,050		10	4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료기기법 제5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77	2	75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	전문위	의결	유지	1991	없음	69,000	4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	사회복지정책실장	13	5	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인체조직안전관리지문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미구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기등이식윤리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2,80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장기등 이식에관한 법률 제 7조	민간인	관동의대명지병원 장기이식센터소장	16	2	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	전문위	의결	유지	2007	없음	45,500	7		0	공개(홈피)	공개(홈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공무원	노인정책관	16	2	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5,000	2	3	1	공개(홈피)	공개(홈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21	3	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판정위	전문위	단순전문	유지	1991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민간인	근로복지공단 전문의사	19	1	1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14,500	3	3	1	자료없음	자료없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3조	공무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23	12	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양보호정책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91	없음	0	2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영유아보육법 제6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16	2	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양생활보호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21,450	2	8	1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12	4	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양약사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63	없음	32,540	5	102	46	자료없음	자료없음	약사법 제18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100	2	9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양응급의료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2	없음	0	2	2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3	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9	3	6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료급여법 제6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차관	9	3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의료심사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1	없음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의료법 제70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차관	13	3	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장신보건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7	없음	2,00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장신보건법 제27조	공무원	보건의료정책실 장	14	1	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2,000	5	2	자료없음	자료없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공무원	국립서울병원장	7	0	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에인생신품우선구 매출진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3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중앙에인생신품우선구 매출법 제5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차관	19	12	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 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4조	공무원	보건복지장관	20	9	1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편의증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0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권 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2	공무원	보건복지부차관	26	12	1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방산음육상협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의학육성법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한의학심발전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1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의학육성법 제6조	공무원	보건복지부차관	20	8	1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9,000	3	4	4	1	자료없음	혈액관리법 제 5조	민간인	교수	14	1	13	
산림청	산림청	국제연합사무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준비위	자문위	자문	신설	2010	없음	12,520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제연합사무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준비위규정						
산림청	산림청	부채지급운용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3	2	공개	비공개	2010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무원	산림청 차장	9(10)	3(4)	6	
산림청	산림청	산림문화·휴양 인증심사 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11,000	4	1	공개	비공개	20101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률 제8조	공무원	산림청 차장	7	2	5	
산림청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106,610		2	18	공개	비공개	201010	산지관리법 제22조	공무원	산림청 차장	48	8	40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문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종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회의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사전제예영향성검토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6	없음	115,020	12	62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소방방재청 방 재관리국장	공무원	80	2	78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1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0	소방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방재청장	공무원	20	8(1)	12(19)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안전기술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3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28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2005	없음	116,000	22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연재해대책법 10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기술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4	없음	0	5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소방방재청 소 방장제국장	공무원	60	2	58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중앙재위험개선사업 심 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0	재위험개선사업 및 이주 대책특별법 제3조	소방방재청장	미구성	11	7	4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중앙저지터膜炎관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저수지터膜炎관리및재 해예방에관한법률4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홍수예방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0	1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1010	홍수예방법 제8조	소방방재청장	공무원	14	5	9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2	1	0	일부공개	자료없음	20090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 별법 제25조	대학교수	민간인	22	3	19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 성평가지로 심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32,000	12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식품위생법 제18조	연구원	민간인	20	0	20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화장품심의위	자문위	단순 자문	유지	1999	없음	0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화장품법 제8조	식약청 차장	공무원	현재미 구성		
여성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	0	0	공개	비공개	201012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여성가족부 차 관	공무원	15	8	7
여성부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 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3	없음	1,400	2	1	1	공개	비공개	20101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차 관	공무원	12	7	5
여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	자문위	심의	축소	1997	2010.6.25	40,000	10	0	0	공개	비공개	201012	청소년보호법 제27조	민간인	민간인	11	1	10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전문분 류)	성격2 성격2 전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준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분과수 2010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운용 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한국국제협력단법18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민관합동해외근거구조협 의회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해외근거구조예관한법률 제8조	외교부장관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	여관정책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3,800	2	10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여관법 제18조	공무원	외교부2차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규정성장추진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1	0		일부공개	자료없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공무원	중소기업청장	17	12	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글로벌전략품목선정 실무 협의회	전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 로지원에관한법률 중소기업 업체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4조	공무원	중소기업청장	20	10	1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금융지원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97	없음		3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장예인기업발동촉진법 제6 조	공무원	중기청차장	19	10	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장예인기업발동 촉진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2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	공무원	중기청차장	19	5	1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2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에관한법률 제31조	민간인	민간인	23	4	1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전문위	심의	유지	1997	없음	0	5	0	0		일부공개	자료없음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 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1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지원중앙협 의회	전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6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가스사고조사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20	11	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3	없음	10,000	3	0	0		공개	공개	201010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론화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방사성폐기물관리법6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공산품안전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2,000	4	0	0		공개	공개	2010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제11조	공무원	기술표준원 국 장	18(25)	4(5)	14(15)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근거법조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	자문위	행정	유지	1951	없음	1,600	1	0	0	공개	공개	201010	광업법 제92조	공무원	자원개발원정 서관	10	1	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7	없음		1	1	1	공개	공개	2010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20	13	7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국가전자무역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0	0	0	공개	공개	201010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5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15	15	수명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국가표준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1	1	2	공개	공개	201010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15	13	2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무역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57	없음	1,702,259	12	0	0	공개	공개	20101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 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27조	민간인	대학교수	9	1	8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 용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89	없음		2	2	0	공개	공개	201010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19조	공무원	에너지자원실장	9	6	3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별정우체국보상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82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14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부품소재발전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1	0	0	공개	공개	20101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5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17	8	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분쟁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0	0	0	공개	미구성	2010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 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미구성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산업표준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61	없음	208,180	1	51	340	공개	공개(홈피)	201010	산업표준화법 제4조	민간인	한민구서울대교 수	482	63(66)	419(416)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4	없음		1	0	0	공개	공개	2010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 조	공무원	지식경제부 에 너지자원실장	17(16)	7	10(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에너지위	자문위	심의	축소	2006	없음	200,000	1	5	7	공개	공개	201010	에너지기본법 제9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24(25)	8(6)	16(1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 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6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5	없음	2,100	0	0	0	공개	공개	20101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공무원	지경부장관	17	9	8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8	없음	0	1	3	1	3	공개	20101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7조	공무원	지경부장관	27(12)	27(12)	0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운영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7	없음	53,375	4	1	1	1	공개	20101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 법 제4조	민간인	교수	10	3	7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우체국예금보험조정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16,200	0	6	0	0	공개	2010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 률 제48조의 2	민간인	교수	9	0	9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이러닝산업발전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400	0	1	0	0	공개	201010	이러닝산업발전법 제8조	공무원	지식경제부 자 관	18	7	11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자유무역지역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0	0	0	0	0	공개	2010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7	7	0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전기위	행정위	행정	유지	2001	없음	275,388	4	10	4	0	공개	201010	전기사업법 제53조	민간인	비상임(차관급)	9	1	8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전략정책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27,120	0	2	4	0	공개	201010	전기사업법 제47조의2	민간인	교수	18	5	13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전시산업발전심의회	자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0	0	2	0	0	공개	201010	전시산업발전법	공무원	지경부실장	12	6	6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 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5	없음	1,000	1	1	0	0	공개	201010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 령 제26조	공무원	지식 경제부제1 차관	10	4	6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0	없음	6,000	0	3	0	0	공개	201010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공무원	에너지자원실장	12	5	7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구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22,100	1	2	0	0	공개	201010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5조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20	12	8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특정물류수급조정심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1	없음	0	0	1	0	0	공개	20101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공무원	추력산업정책관	20	6	14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 의회	자문위	심의	유지	1990	없음	0	1	1	2	0	공개	2010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공무원	지식경제부장관	15	7	8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융자심의위(해외물자원 개발사업)	자문위	심의	통합	2006	없음	380,000	1	3	2	0	공개	201010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 령 제11조의2	민간인	교수	분과2합 친것	2	22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전문분류)	성격2 성격2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제 정연도	존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400	1	1	공개	공개	201010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2조 의3	공무원	지식경제부 제2 차관	15	5(6)	10(9)	
통일부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18,604	2	2	1	공개	자료없음	201009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	통일부장관	23(20)	14(11)	9
통일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전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89	없음	14,362	0	8	공개	자료없음	20100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공무원	통일부장관	18	13	5	
통일부	통일부	통일고문회의	전문위	단순 자문	유지	1970	없음	47,395	0	2	공개	자료없음	201009	통일고문회의규정	민간인	민간인	37	0	37	
특허청	특허청	배지셀게심의조정위	전문위	의결	유지	1993	없음	2,600	0	0	공개	자료없음	201012	반도체집회로의 배지셀 계에 관한 법률 제25조	민간인	대학교수	12	1	11	
특허청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5,000	0	2	공개	자료없음	201012	변리사법 제4조의4	공무원	특허청장	15	4(1)	11(14)	
특허청	특허청	변리사장계위	전문위	의결	유지	1961	없음	400	0	2	공개	자료없음	201012	변리사법 제16조	공무원	특허청장	7	3	4	
특허청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전문위	의결	유지	1994	없음	8,802	0	0	공개	자료없음	201012	발명진흥법 제41조	공무원	특허청장	20	3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	전문위	의결	유지	2000	없음	2,100	0	0	공개	비공개	20110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민간인	민간인	9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1	없음	200,000	1	7	공개	비공개	2011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민간인	교수	10	0	10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찰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91	없음	130,390	0	4	자료없음	자료없음	201106	경찰법 제5조	민간인	민간인	7	0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	전문위	의결	확대	2005	없음	96,000	0	7	공개	비공개	201106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	공무원	행안부 제1차관	7	2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정보관리협의회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급여제심위	전문위	의결	유지	1960	없음	63,766	0	8	공개	비공개	201106	공무원연금법 제80조	민간인	민간인	9	0	9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 자문분 류)	성격2 성격2 자문분 류)	mb기 간변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혼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유형	직위	총계	당연	위촉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운영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0	없음	4,952	2	0	0	공개	비공개	201106	공무원연금법 제75조	공무원	행안부 제1차관	19	6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익사업선정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0	없음	45,000	3	0	0	공개	비공개	20110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	민간인	정전구	15	0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기부금사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96	없음		5	0	0	공개	비공개	201106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 법률 제5조	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	10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도서개발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1986	없음			0	0	공개	비공개	201106	도서개발촉진법 제14조	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	14	10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63	없음	1,411,446	949	0	0	공개	비공개	201106	국가공무원법 제9조	공무원	차관급	7	5(1)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순직보상심의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6	0	0	공개	비공개	201106	공무원연금법 제75조의2	공무원	행안부 제1차관	9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	행정위	행정	유지	2004	없음	597,354	7	4	0	공개	비공개	201106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6조의3	민간인	교수	7	1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장쇄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0	공개	비공개	20110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의2	공무원	행안부 차관보	12(11)	5(7)	7(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62	없음	8,532	39	0	0	공개	자료없음	201106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7조	공무원		5	5	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0	2	0	0	공개	비공개	20110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법률 제22조	민간인	대학교수	9	4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정부공직자윤리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93	없음	68,171	12	1	0	공개	비공개	201106	공직자윤리법 제9조	민간인	민간인	9	5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조직분석 진단자문위	자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 정 34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주식배치신탁심사위	자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5	없음	68,445	6	0	0	공개	비공개	201106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	민간인	민간인	9	0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중앙도로명주소위	자문위	심의	신설	2009	없음	0	2	4	1	공개	비공개	201106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공무원	행안부 차관보	20	2(9)	18(11)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전문분류)	성격2 성격2(전문분류)	mb기 간편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 정연도	준속기한	2011예산(단 위 천원)	2010본회의수		2010본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 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유형	직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심사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0	1	4	4	자료없음	자료없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위	전문위	심의	통합	2009	없음	7,800	3	0	0	공개	비공개	201106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공무원	행안부 제2차관	15	2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 정위	전문위	의결	유지	2006	없음	0	2	7	2	공개	비공개	2011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5조	공무원	행안부 지방재 정세제국장	15	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 정위	전문위	심의 의결	유지	2007	없음	21,818	3	1	1	공개	비공개	201106 지방자치법149	민간인		11	5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합동광고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1	없음	21,600	2	0	0	공개	비공개	201106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 조	민간인		19(17)	1	18(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식진단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6	없음	0		0	0	공개	비공개	201106 지방재정법 제56조	민간인	민간인	12	4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	전문위	심의	유지	1999	없음	5,000	2	0	0	공개	비공개	201106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	14	4	10
환경부	환경부	국가습지심사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9,000	3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습지보전법 제5조의2	공무원	환경부차관	30	18	12
환경부	환경부	국립공원위	전문위	심의 의결	유지	1967	없음	30,000	3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자연공원법 제9조	공무원	환경부차관	20	11	9
환경부	환경부	국립생태원길림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5,612	2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국립생태원건립위 규정	공동	환경부차관, 민 간인	25	5	20
환경부	환경부	명세서공개심사위	전문위	의결	신설	2010	없음	4,00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 령35					
환경부	환경부	물레이용정책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물의이용촉진및지압예관 한법률7					
환경부	환경부	석면피해구제심사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10	없음	18,000	0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석면피해구제법36					
환경부	환경부	수질및수생태계 정책심의 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1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제10조의3	공무원	환경부장관	18	5	13

소속	주관	명칭	성격 1(행정/전문분류)	성격2 성격2 전문분류)	mb기 간편화 양상	근거법조 항목조제 정연도	혼속기한 위 친원)	2011예산(단 위 친원)	2010본회의수		2010분과회 의수	부처 소관 위 보고서 공개 여부	부처소관 보고서 중 위원명단 공개 여부	보고서 작성시점	근거법령	위원장			위원수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총계	직위	유형
환경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4	없음	5,000	1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	공무원	환경보건정책관	20	7	13	
환경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행정위	행정	유지	1997	없음	1,933,000	27	0	0	공개(졸피)	공개(졸피)	수시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공무원	위원장(고위)	15	1	14
환경부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	전문위	심의	확대	2011	없음	35,000	2	6	5	자료없음	자료없음	환경정책기본법37	민간인					
환경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215,000	3	4	1	자료없음	자료없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5조	민간인	대학교수	29	6	23	
환경부	환경부	환경교육진흥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80,000	1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환경교육진흥법 제7조	미구성					
환경부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69,700	2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환경교육진흥법 제14조	미구성					
환경부	환경부	환경보건위	전문위	심의	신설	2008	없음	11,000	2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환경보건법 제9조	공무원	환경부차관	20	5	15	
환경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신정심사위	전문위	전문 자문	신설	2008	없음	0	1	0	0	자료없음	자료없음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미구성					
환경부	환경부	황사대책위	전문위	심의	유지	2007	없음	0	1	1	0	자료없음	자료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공무원	환경부장관	18	14	4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